

第288回國會
(臨時會)

行政安全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3月24日(水)

場 所 行政安全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3.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4.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審査된案件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33
3.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33
4.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33

(10시12분 개의)

○委員長 趙鎭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국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까지 마친 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일부개정법률안이지만 중요 안건으로 보아서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법안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윤상현 의원·강기정 의원·양승조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3건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정법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공청회의 모든 일정을 국

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0시14분)

○委員長 趙鎭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공청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가운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에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어떻게 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

록 진술인 여러분께서 평소에 쌓으신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차후에 입법을 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위해 참석하신 네 분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배치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의 서경진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입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공청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에 다른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고, 진술인이 모두 말씀이 끝나면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의 서경진 변호사님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을 좀 지켜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술인 서경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시한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야간 옥외집회가 24시간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무법상태가 초래됩니다.

집시법의 합리적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신장시키고 국가경제를 살리며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개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집시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예상되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개정 방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기속하기 때문에 개정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결정 취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집회나 시위는 집단적 행위로서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따라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 예컨대 인근 시민들의 휴식권이 나 재산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헌법상 보호되는 것입니다.

야간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제한 문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요, 현재 결정도 바로 동일한 취지입니다. 현재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이 무조건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즉 금지 시간대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공동체의 필수적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지만 다른 한편, 집회의 자유는 다수인이 집단적 형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일정 범위 내의 제한은 불가피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이 직접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 이외의 방법으로 관련 법익들을 비교衡量하여 그러한 법익들이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모두 동시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리 정돈되어야 할 것이더라는 것이 위헌 의견을 낸 5인의 입장입니다.

이어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입니다.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시법 제10조의 규범력과 실효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2010년 6월 30일 시한으로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위헌심판의 대상은 옥외 집회 부분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아직 야간 시위는 절

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한의 구체적 수단 방법은 입법 재량에 해당합니다.

금번 현재 결정의 취지는 야간 옥외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나 제한 방법은 사전 허가제가 아닌 방법을 택하되 구체적 수단 방법은 입법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야시간대의 옥외 집회 또는 시위는 시민의 평온을 해칠 수 있고 폭력행위의 발생에 대한 대처와 치안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다만 현재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제한시간의 범위를 심야시간대로 구체적인 시각을 정해서 개정하도록 국회에 재량을 인정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오는 6월 말까지만 현행법의 유효성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제한 이유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한 취지인데요, 당연하고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간 옥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야간 옥외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고요.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권입니다. 또한 집시법 제1조에서도 국민의 집회·시위권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위헌 의견을 내신 재판관분들도 제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간 옥외 집회·시위를 일반적으로, 전면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나 합리적 제한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허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헌 의견의 입장입니다.

이어서 제한의 방법입니다. 금지 시간대 설정인데요.

야간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위압감, 폭력성의

문제입니다. 심야시간대의 야간 집회·시위는 굳이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주위 시민들에게 주는 위압감이 상당하여 이들의 휴식권·재산권 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 통계라든지 야간 폭력시위의 양상 등을 종합해 볼 때 야간 집회의 폭력 변질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야간 옥외 집회는 주간보다 질서 유지가 어려워서 그만큼 공공의 안녕 질서에 해를 끼칠 개연성이 높고 심리학적으로도 야간에는 주간보다 자극에 민감하고 흥분하기 쉬워 집회·시위 본래의 목적과 궤도를 이탈하여 난폭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12년간 집회·시위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야간 집회가 증가하는 가운데 야간 집회가 불법 폭력화되는 확률은 주간에 비해 약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약 1.4%, 참여정부 시절 약 5.7%, 현 정부 약 10% 비율로 야간 집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불법 폭력 집회 중 야간 폭력 시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상회합니다. 즉 연평균 불법 폭력 시위 99.7건 중 야간 폭력 시위는 50.3건으로 전체 불법 폭력 시위의 50.5%를 차지하는데요. 특히 야간 집회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될 확률이 주간의 13.6%에 달합니다. 주간 집회 중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한 경우는 0.46%에 불과한 반면 야간 집회 중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한 경우는 6.21%입니다. 덧붙여서 야간 집회 건당 대비 경력이 주간 집회보다 3.08배 정도 많습니다.

한편 단순 수치상으로는 전체 집회 중 불법 폭력 시위 발생률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간 집회가 증가하는 가운데 야간 집회가 불법 폭력화 되는 확률이 주간에 비해 약 14배 정도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큰 의미 없는 통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내용면에서도 집회·시위 문화가 아직은 폭력적이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사회적 비용 통제 곤란의 문제입니다.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한 생산 손실, 교통비용, 일반 국민의 직·간접적 피해와 심리적 부담 등 사회적 손실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간제한 방식의 불가피성입니다.

현재의 집회·시위 문화를 감안할 때 야간 옥외 집회는 특성상 주간 집회보다 질서 유지가 어

렵고 익명성 등으로 인해 폭력화될 가능성이 많으며 일반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야간 옥외 집회를 전면 허용하되 소음, 장소를 제한하자는 방안은 심야시간대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인데요. 확성기 사용 금지와 장소 제한 조치를 하더라도 사생활의 평온 등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밤 10시 기준의 타당성입니다.

금지 시간대는 우리나라의 집회 수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라는 양 법익의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밤 10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으로 보입니다.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53.1%가 22시 이후의 제한에 찬성하고 있고요. 최근에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를 보면 75% 이상이 야간시간대의 집회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외국 입법례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현재 야간집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 러시아, 중국, 미국 일부 도시 등인데요. 중국은 22시 이후, 러시아·프랑스는 23시 이후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재·개정할 때에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은 그 나라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법률이라도 나라마다 각각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 입법례라고 해서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작정 쫓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시법은 그 나라의 집회 수준, 국민의 준법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하며 외국의 입법례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집회가 과다하고 불법 폭력이 잔존하는 등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반면 예를 들어서 OECD 국가들은 엄격한 법 집행 등으로 준법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를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해서 심야시간 예컨대 밤 10시를 기준으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는 야간에 금지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향후에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면 그에 걸맞은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서정진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의사진행발언이요? 그래요. 잠깐요.

그러면 유정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유정현 위원** 국회에 와서 진술을 할 때에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장 문제에 있어서 만큼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했던 것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국회에서 한다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趙鎭衡** 유정현 위원 말씀은 아마 지금, 박주민 변호사님, 넥타이를 좀 매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주민**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말씀하시지요.

○**진술인 박주민** 일단 복장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님이 내신 안이 합헌적인지에 대해서 개정안의 제안 취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의 연혁과 규정체계에 부합하는지 그다음에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한 검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시민의 생활 방식과 조화를 이루는지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취지로 들고 있는 것은 옥외 집회, 특히 이런 옥외 집회가 야간에 시간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사생활의 평온이라든지 주요 국가

기관의 안전, 교통 소통이나 소음에 대한 문제 우려, 그다음에 심야시간대의 치안 유지나 폭력 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나 이런 것들하고 주위 상인들의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생활의 평온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개정안의 취지로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집시법이 모두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규정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8조라든지 11조(주요국가기관의 안전), 12조(교통소통), 그리고 14조(소음 규제) 이런 규정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8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재산이라든지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권에 방해를 초래해도 역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등 주요 국가기관의 근처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조는 교통 소통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 집회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14조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개정안의 제안취지의 대부분은 현행 집시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현행 집시법은 제6조에서 모든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제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고제라는 것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질서유지선을 두게끔 하는 조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집시법에 의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전부 다 달성될 수 있다, 특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현행 집시법으로도 거의 모든 집회가 충분히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3을 먼저 보시면 2009년도 4월까지의 집회 금지 통고 사항입니다. 이미 164건으로 2008년도 1년 동안 금지 통고한 것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 전체를 통산한다면 아마 2배 이상의 숫자를 금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4를 보면 5월, 6월 달에 서울지역에 100건의 집회를 신고했을 때 단 한 건만 허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에서 민주노총이 한번 큰 충돌이 있었을 때 한승수 국무총리가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언을 한 뒤에 집회의 주체라든지 형식, 내용, 방법을 모두 불문하고 전부 금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삼보일배(三步一拜)를 형식으로 하는 집회조차도 금지가 되었고 천주교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설립 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회가 금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집시법으로도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집회를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집회 자유에 대한 침해를 낳을 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우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현재 폭력 집회는 전체 집회의 0.5%~0.7%대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97년도 기준이지만 2%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봐서 우리나라의 집회 문화는 이미 선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야간 집회로 인해서 폭력적인 어떤 형태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대검찰청의 집계로도 0.66%만이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집계를 좀 자세히 보면 총 106일간 2398회의 야간 집회가 있었는데 그 야간 집회 중에 도로 점거는 53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것은 16회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16회의 집회를 막기 위해서 야간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시간을 10시 이후로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2382회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집회까지도 차단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이렇게 소수이나마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나를 살펴보면, 먼저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최근에 경찰력의 과도한 동원이 오히려 원인이 되고 있다는 내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 역시, 바로 몇 주 전이었

지요, 경찰의 강경한 집회·시위 진압이 오히려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차벽 설치 등이 집회의 폭력성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60년대에 인종갈등과 베트남전쟁을 둘러싼 폭동들이 많이 발생해서 대통령 산하에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폭력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경찰력의 과도한 동원이 오히려 폭력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고 특히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로 인해서 조직된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집회에 대해서 과격하게 진압하는 것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집회가 사실은 인근 상가를 부순다든지 또는 주차된 차량을 방화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경찰과의 충돌에서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2002년도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폭력적인 것이 발생하지 않았었고 2004년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한 달 이상 야간집회가 지속됐지만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한 바가 없는 것을 봐서는 경찰력의 과도한 동원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법률과 비교하더라도 현재는 야간과 주간을 차등하던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야간을 이유 없이 과중하게 처벌한다는 이유로 다 위헌판결이 났었고 형법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이라는 특수한 형태가 결합돼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된 것으로서 야간이라는 것을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현재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재산상 손해 예방도 현재 지금 주변 상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그렇지만 상인들의 매출을 보면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매출이 늘고 어떤 사람은 매출이 준다든지, 또는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대부분의 상인들이 재산상 손해를 전부 다 취하하고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봐서는 그 인근 주변의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의 연혁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법은 1960…… 지금 현행 집시법은 1962년 5차 개정 헌법에 따라서 제정된 것인데 이 5차 개정 헌법에는 언론·출판 그리고 집회에 대해서 허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시간과 장소를 법률로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9차 개정 헌법이 87년에 개정되면서 1962년 헌법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집회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시간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로 시간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현재 87년도 헌법체계에서는 헌법 제정권자들이 그런 발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고사항일 뿐이지만 실제로 신고주의라고 하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집회관리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야간집회를 시간대를 정해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시민의 생활방식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봐서도 특별하게 알 수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3시부터의 집회를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1457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무려 800시간이 많은 2261시간이고, 그렇다면 하루당 두 시간을 더 노동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프랑스가 23시라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01시부터 제한하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는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근로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적은 시간 동안 집회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체입법의 방향을 얘기한다면 심야시간대에 집회를 제한하거나 또는 야간의 특정한 장소에서의 집회만을 제한하거나 또는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의 집회에 대해서 가중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야시간대라고 하는 것은 목영준 헌법재판관도 현재 판결문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심야시간대에 집회를 제한해야 된다’. 심야시간대라는 것은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나 국어사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밤 12시 정도부터 시작되는 밤의 한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시부터는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심야시간대의 집회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장소적인 차별을 두거나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장소적 차별이나 이런 것을 두는 것은 이미 소음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몰 후 집회를 제한함에 있어서 밤 10시부터 제한하는 것은 과잉한 규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두지 않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규제를 둔다 하더라도 심야시간대의 일부 시간대만 제한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서만 집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박주민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님 진술해 주시지요.

○진술인 임준태 이 나라의 헌법이 제정되기 전인 1894년부터 우리나라 경찰은 집회·시위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서양의 역사는 헌법이 먼저지만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찰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작용이 이런 집회·시위·결사에 대해서 먼저 개입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조진형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그 안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여러 분들이 의견들을 달리하셨습니다마는 반대의견을 내셨던 분들의 취지를 보더라도 집회·시위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던 규정을 완화시켜서 합리적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야간이라고 하는 물리적 특수상황,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

국이 이라크전 개전할 때 항상 야간에 폭격을 감행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것이 바로 전쟁의 개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수면과 평화, 안식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굳이 야간에 금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선진국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 10시에 집회를 하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상한 나라들이지요. 물론 한국이라는 사회가 워낙 격동적이다 보니까, 직장인들이라든지 또 젊은 사람이라든지 많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야간 집회·시위 문화가 한국의 독특한 집회의 형태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야간 집회에서 일어나는 질서 교란행위라든지 폭력 가능성은 항상 상존합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그 수치가 미미하다라고 하지만 집회·시위는 100명이 하는 것도 1건이고 1만 명이 모이는 것도 1건입니다. 그래서 그 1만 명이, 야간에 엄청난 군중이 모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회·시위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또 질서유지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 간에 항상 갈등이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찰이 이와 같은 집회·시위 관련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입법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그러한 시간대의 합리적 조치는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집회·시위라고 하는 가장 헌법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평화를 누리고 안온하게 휴식을 취해야 될 야간에 대한 기본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 특정한 시간대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24시간 동안 전면 금지됐던 야간 집회·시위에 대해서 조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은 상당히 진일보하고 또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집회·시위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방향이고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야간 집회·시위와 관련된 많은 시민들의 견해를 조사를 해 봐도 역시 입법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60% 정도가 적어도 이 심야시간대 또는 야간에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입법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특정한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법의 취지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국민투표법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히 야간연설 같은 경우는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집회·시위보다도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은 그러한 중요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법에서도 야간 11시부터 상오 6시까지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도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이런 강제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야간에 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많은 법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수면과 평화를 유지해야 될 야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집회·시위라고 하는 그 기본권이 설사 중요하더라도 다중으로 인한 주변의 질서유지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시간은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2007년도 G8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독일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물론 독일도 사전에 신고를 해서 특정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금지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우리나라와 아주 유사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사건들 중에서 약 60개 단체가 집회·시위를 신청을 했다가 50개 단체 정도가 금지됐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그와 관련된 사례 중에 특정한 지역에서 집회가 개최가 될 때에 집회 인원이 많아서 그 지역에 있는 경찰로 하여금 집회·시위에 대한 정상적인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비록 그 집회가 평화적인 집회일 수 있더라도 경찰에 의한 질서유지가 불가능할 때는 집회를 금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집회·시위가 앞으로 만약에 24시간, 정말 심야시간대까지 확대돼서 집회·시위가 많이 증가된다라고 한다면 그 집회·시위에 대한

일차적인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찰력에 대한 공백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경찰이 국가경찰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1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더라도 지방에 있는 경찰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경찰관 1000명이 2500명의 집회·시위를 제대로 질서유지를 못 한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이 집회는 평화적이라 하더라도 질서유지가 안 될 경우라면 집회를 금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질서와 집회·시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러한 입법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한국의 집회·시위 문화는 사실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좋은 선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이라든지 또 탄핵정국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들은 한국사회가 성숙해 가는 집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회적 현안 이슈들이 모두 정치적이슈화가 되면서 집회·시위 만능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선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에 대한 시간적 규제 또 일반 시민들의 평화와 안온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 제한 시간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매체가 발전된 21세기 대한민국이 과연 광장 민주주의에 모든 것을 걸고 대한민국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鎭衡** 임준태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오동석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오동석** 아주대학교 오동석입니다.

저는 집시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여러모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보면 오히려 10조는 그냥 삭제하는 것이 맞고 현행의 다른 법률, 다른 집시법의 규정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간대를 문제를 삼는다라고 한다면 24시간 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법

규정에 의해서는, 예를 들면 허가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법률로 규정하게 되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제도적 장치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대로 규율하는 것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수단들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헌법에 보면 누구나 37조2항을 얘기를 합니다.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제로 어느 기본권도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누구나 단서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떤 기본권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을 마음대로 제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분명히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입법권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법률로써 제정하라는 것의 의미는 과거에 집행 권력 쪽에서,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그것을 만들어 정하던 것에 대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헌법은 입법자인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헌법 원리들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의 경우에만 정말 구체적으로 이것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委員長 趙鎭衡** 마이크를 조금 가깝게 대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술인 오동석** 예, 그런 상황 내지는 구체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을 하라고 하는 법리들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본권보다도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헌법적인 법리이고요. 따라서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왜 그것을 제한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4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특별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시라고 해서 당연히 그러

한 구체적인 위협을 전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의 법리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이라고 하는 상황은 전시보다는 분명히 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단지 야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논거는 충분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간인 경우에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초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논거가 충분히 있어야만 그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것을 금지하거나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 51쪽입니다만 독일 집시법에 보면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서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도 조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흔히 경찰권이 발동될 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권이 발동되는데 이 집시법에서 말하는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를 들면 범죄의 예방이나 기타 등등을 위해서 경찰권이 발동되는 것보다도 더 엄격하게 해석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찰권이 발동되는 상황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함부로 경찰권이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는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도로 혼잡을 회피하려는 이유만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직접적인 위협이 있다고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경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영국의 홀리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감정이 서로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야간에 축구경기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홀리건의 난동이 있었다라고 해서 아예 경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 집회와 시위라

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 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구체적인 위협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 고 한다면, 그리고 그 분명한 경우가 어떤 것이 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법에 규정되지 않는 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말한 취지에 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헌법재판소하 고 국회하의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국회에는 또 국 회의원분들께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신 것이고 또 헌법에 대해서 헌법을 구체화하는 일차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 재 판관들은 그런 법률이 헌법의 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명백하게 벗어나는 경우에만 이것이 벗어 난다라고 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입법자인 국회에 대해서 일정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 니까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최소한의 기준인 것이지요. 국회의 입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기준 이하로 내려가 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일 뿐이지 위로는 열 마든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기 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그런 원칙을 유지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입법을 해 주셨으면 하 는, 그러한 입법안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제 생각에는 우려하는 바 는 있겠지요. 야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이겠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 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월드컵 경기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집회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전제로 해서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의 재판소 판례, 51쪽 밑을 다시 한번 말 씀드리면 집회의 자유는 집단의 권리가 아니고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집회에 참여한 한두 사 람이 폭력행위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 이 폭력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준비를 했다라고 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 또 할 위험이 있는 사람만 쉼아내면 되는 것이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

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 그것이 우리의 헌법과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크 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집시법의 조항은 53쪽 아래에 있습니다만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 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 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입니다. 이런 집회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집회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사전에 예측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것을 미 리 예상해서 이럴 것이니까 미리 금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집회 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구체적인 상황의 경우에 있어서는 55 쪽 아래에 보시면 일정한 신고장소에서는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어떤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 다만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 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 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집회와 시위가 허용되지 않는 규정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 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 처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권은 가지고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단순히 시간적인 어떤 규제를 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비교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 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제 한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장소를 제한하는 경 우도 있을 것 같고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 서 우리의 집시법을 구성해 보면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규제하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 면 시간의 문제만을 파악하시기보다는 전체를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57쪽에 표가 약간 잘못됐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맨 오른쪽 칸에 있는 것들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집회 시간

이나 장소 또는 개최하는 것 자체는 최대한 열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요.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폭력행위가, 그것도 개인의 폭력행위가 아니라 집회 전체가 폭력행위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제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가 많았다고 하는 통계가 잡힌 연도가 어느 해냐 하면 1987년입니다. 1987년이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아실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80년 헌법에 비추어 보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에 의해서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모태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시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좀 그런데 말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오동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진술인의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1인당 5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시다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위원장한테 말씀 주시면 계속해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진술인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소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남 위원 공청회에 자리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동석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집회에 참가하는 국민들보다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그동안 잦은 집회 시위의 개최와 경찰의 대응으로 인해서 법익의 침해를 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상인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예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동안 집회 시위의 주체가 단순히 주최자와 경찰이라는 측면으로만 이해되었기 때문이고 향후 바람직한 집회 시위의 문화 정

착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오동석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를 분명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부터 따져가기 시작하면 왜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됐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기준에 따르더라도 만약 그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절히 대응해서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단순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의 집회와 시위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소남 위원 다음은 임준태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을 포함한 집회 시위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인식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한 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일반 시민들의 78%는 집회 시위가 소음 피해를 야기한다고 했으며 81%는 교통정체를 야기한다고 했고 53%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4%가 야간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될 것이라고 답했고 실제로도 2008년 전체 불법 폭력 시위 중 80%가 야간시위였고 2009년의 경우 전체 불법 폭력 시위의 40%가 야간시위였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국민들의 평온과 휴식권이 위협받는다면 야간집회만이라도 제한을 두는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술인 임준태 사실 강력범죄, 1년에 살인 사건이 1000건 납니다. 오늘 아마 하루에도 3건이 일어났을 텐데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방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야간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심리를 보면 야간이라는 익명성, 그 물리적 상태가 대단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집회 시위도 주간에 개최됐을 때보다는 야간에 다중이 운집한 장소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의 돌발행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나 일반 사람들의 심리상태 또한 범죄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야간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시민들에게 많은 위협을 초래할 가능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어떤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제도를 만든 것이지 장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굳이 이 법이 필요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의 문제가 다소 조금 완화됐다라고 해서 장래에 이 법이 필요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선례로 본다면 야간집회로 인한 폭력, 무질서, 사회적 불안, 이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의 이런 개정안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집회 시위를 보장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소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주민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집회의 특성상 부각되는 소음 문제에 대한 것인데 집회 현장에서 잘 지켜 지지도 않고 민원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음은 그 기준을 떠나서 특히 수면이 부족한 현대인에게는 매우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수면장애 환자가 지난 7년 동안 4.5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집회 시위 때문만은 아니겠습니까만 집회 허용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상황까지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박주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행 집시법도 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데시벨입니다. 80데시벨은 버스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이고 진공청소기를 돌리면 한 94데시벨의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현행 집시법의 규정을 가지고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 이유로 사전에 금지할 수도 있고 또 사후에 집회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대를 더 제한해야만 소음 기준이 보다 더 잘 관철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심야시간대에서도 일부 주거지역에서만 집회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집회의 자유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함에 있어서는 정교성이 필요합니다. 정교성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개정안은 정교성보다는 포괄성, 편의

성 이런 것들만 강조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소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김소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성 위원** 정수성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집시법 개정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가 국격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초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초질서 확립의 출발점은 폴리스 라인 준수라고 봅니다.

주상용 전 서울지방청장은 지난해 국감 당시에 기초질서 확립 대책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그동안에 교통질서나 기초질서를 애써 가꾸 놓아도 시위가 한번 일어나면 모두 허사가 됩니다. 시위대가 거리를 한번 점거해 버리면 그동안 무단횡단한 사람들 단속한 것이 허사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서는 시위질서가 확립되어야지 기초질서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본 위원도 주 전 청장의 발언에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서경진 진술인에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집시법의 제정 목적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현재는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조진형 위원장의 개정안을 보면 위헌 의견인 허가제에 해당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과잉금지에 해당된다는 시간대를 축소하고 명확히 하였는데 이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보십니까?

○**진술인 서경진**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요, 제 생각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 허가제적인 요소를 제거했고요, 기존에 6시 이후에 기본적으로 금지됐던 시간을 10시까지 확장했고 그럼으로써 주위 시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수면권이라든지 재산권 등을 조화롭게 도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타당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박주민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은 진술 내용에서 집시법의 대체입법 방향에 대해서 심야시간대의 집회를 제한하거나 야간에 특정한 장소에서의 집회만을 제한하는 것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범위나 방식은 후에 논의하고 진술인이 제기한 것처럼 금지시간대 설정을 둔다면 위헌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진술인 박주민 일단 지금 지난번 결정을 보면 헌법불합치가 나오게 된 것이 목영준 재판관 등 2인이 과잉금지다라고 하면서 헌법불합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영준 재판관 등 2인은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심야시간대만 제한하는 것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판결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야시간대라는 것을 나름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과사전이나 이런 것을 뒤져 보면 '밤 12시부터 시작되는 밤의 한가운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대로 제한한다고 한다면 일정 정도 현재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구성상 합헌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안은 제가 보기에 지난번 결정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제 질문에 결론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준태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에서도 야간시위에 대한 금지시간 설정은 합헌으로 밝히고 있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밀착되어 있는 특성상 야간집회는 법률로써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임준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과연 몇 시부터가 합리적이냐 그것은 입법자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고려했을 때 밤 10시 그다음에 새벽 6시까지 정도라면 합리적인 제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성 위원 오동석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있었던 APEC 정상회의에서 41개 단체, 2만 7000여 명이 부분별 집회 후 쇠파이프, 죽봉 등을 휘두르며……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십시오.

○委員長 趙鎭衡 예, 그러세요.

○정수성 위원 정상회의 행사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폭력 집회 시위가 발생한 바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진술인 오동석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수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불법·폭력 집회를 차단할 예방책조차도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오동석 지금 이렇게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예방책이 될 수 있을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것들이 예방책이 된다고 해서 모든 예방책을 다 강구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어떤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수성 위원 진술인은 지난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09년 9월 20일 한겨레를 보면 주택가 등에서는 좀 이른 시간까지만 허용하는 제한이 필요하겠지만 도심에서는 밤 10시와 12시가 큰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진술인 오동석 예.

○정수성 위원 그렇다면 주택과 도심을 구별해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제한적 금지시간대 설정에는 공감한다는 의미입니까?

○진술인 오동석 진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헌법 전반적인 체계를 고려해 볼 때는 현행으로도 그러한 제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시간대와 관계없이, 설령 심야가 아니어도 주택가에서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성 위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가를 거론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야간집회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수면권, 휴식권 등의 기본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진술인 오동석 글썽요, 수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어떻게 위치를 매길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역사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하고 비교해 볼 때는 그것을 단순히 권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것을 단순히 다른 여러 가지 소음하

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심야에 주택가에서는 차량을 아예 못 다니게 한다든지 이런 법까지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핵심은 정치적인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측면에 있는 것이어서 저는 그것이 기본권에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수성 위원 제가 개인적인 생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범위가 문제라면 여야의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G20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회의 기본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폭력 시위를 막을 수 있는 작은 시간장치만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당론을 떠나서 위원님들의 소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정수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시간을 함께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진술인들께서는 아까 논지를 충분히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위원님들 말씀에 단답으로 해 주시면 시간이 좀 아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먼저 오동석 교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현재의 헌법불합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정시간대 야간집회를 제한한다는 발상은 여전히 위헌이라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진술인 오동석 죄송합니다. 잘……

○김태원 위원 잘 못 들으셨어요?

○진술인 오동석 예.

○김태원 위원 야간집회를 제한하겠다는 현재의 발상은 계속 위헌적인 요소다 그렇게 보고 계시느냐……

○진술인 오동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 헌법재판소의 주된 헌법불합치결정 이유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오동석 현재의 핵심적인 다수의 의견은 예외를 설정해서 행정 집행기관에게 그것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헌보충의견에 보시면 야간 옥외집회를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

는 점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의 재판관이 심판 대상을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하여튼 주된 이유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었지 않습니까?

○진술인 오동석 예.

○김태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10시 이후의 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야간 촛불집회 등 각종 집회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변 상인이나 교통 불편, 주거 안정권 등의 피해에 대해서 진술인은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진술인 오동석 구체적인 피해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방법을 어떻게 취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김태원 위원 08년 9월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본 결과는 알고 계시지요,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진술인 오동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주변 상인들의 영업 손실이 약 9042억 원 그다음에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총 한 3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진술인 오동석 비용 추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주변에 경제학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들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국민의 기본권 또는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경제적으로 계산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김태원 위원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는 사회적인 의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회·시위 하시는 분의 권리와 자유도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일반 국민들의 그러한 것도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생활에 있어서 상가고 주택하고 생활권의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어렵지요?

○진술인 오동석 예, 쉽지 않습니다.

○김태원 위원 특히 지금 주상복합건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기류로 봤을 때 야간시간대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저는 합리적인 조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오동석 그런 경우에는, 그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으면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칙에 따르게 되면 명확하게 되는 선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원 위원 다음에 박주민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폭력 시위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셨지요?

○진술인 박주민 (고개를 끄덕임)

○김태원 위원 그러나 현재 내용 면에 있어서는 불법·폭력 시위가 오히려 더 상당히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진술인 박주민 구체적으로 어느……

○김태원 위원 쌍용자동차 파업 때 보면 사제 박격포, 새총, 표창, 가스통 이런 부분이 불법시위 장비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폭력시위 1건당 경찰관 부상자 수가 07년도 이후 매년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07년 3.16명, 08년 6.14명, 09년 11.33명입니다.

그리고 불법·폭력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김상겸 단국대 교수께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GDP의 2.47%인 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위의 피해에 대해서도 전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마무리해 주시지요.

○김태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청 단호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위문화가 어떤 과정을 가고

있느냐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우리 시위문화에 적합한 그런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위문화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도 필요하고 더 시위문화가 평화적으로 잘 정착이 된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또 광범위하게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술인 박주민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委員長 趙鎭衡 말씀하시겠어요?

○진술인 박주민 예.

○委員長 趙鎭衡 그래요.

○진술인 박주민 미국의 경우를 많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폴리스라인을 얘기하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폴리스라인을 넘는 경우에 확실히 엄격하게 대응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폴리스라인을 넘는 경우에 넘는 자만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폴리스라인을 한두 사람이 넘었다 또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집회 자체를 불법화해서 집회 자체를 강제해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찰의 어떤 내부규칙상 집회 참가 예상 인원의 2배에서 3배의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강제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경찰의 집회 관리방식이나 통제방식도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원 위원 답변에 대해 마무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마무리하시지요.

○김태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의 준법정신, 시위문화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그러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경찰의 시위 진압 방법도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체에 국민 전체가 안정된 생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제한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김태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유정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유정 위원** 민주당 김유정 위원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신 네 분 진술인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서경진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통계를 말씀해 주셨고요. '98년부터 2009년까지 집회 시위 현황을 분석하니 야간집회가 불법폭력화 되는 확률이 주간에 비해서 29배가 높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통계를 제시하신 것이 야간이라는 어떤 시간적 특수성이 폭력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진술인 서경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정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야간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특수성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야간 옥외집회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야간 옥외집회 자체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강제로 금지·해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 2004년에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야간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수상황과 폭력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단일한 인과관계로 단정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판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박주민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오히려 환경심리학에서 주간에 일광시간의 증가가 자살률이나 범죄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원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저와 조금 견해를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서경진** 야간집회가 폭력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각종 통계 자료를 보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는 것이고요. 통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또 각자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제해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강제해산을 하게 된 것은 불법집회에 대해서 강제해산을 한 것이

지 전혀 불법의 여지가 없는 합법집회에 대해서는 강제해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정 위원** 오동석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회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헌재가 2003년에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요. 그래서 집시법 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이것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전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 된다면 2003년 헌재의 판결에 비추어서 또 다른 위헌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오동석** 저는 일단 헌재의 입장과 좀 다르게 국회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실질적으로 재판관님들의 판단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헌보충의견을 낸,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상황이나 행위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쪽으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김유정 위원** 그 점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 두 재판관의 위헌보충의견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행위의 개연성이 있다는 예단만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경진 진술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주변 상인들의 재산권 피해 이런 것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촛불시위와 관련해서 주변 상인들의 손해관계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예.

○**김유정 위원** 동일 장소에서 영업하는 원고들 중에는 매출액이 증가한 원고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가, 집회 시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과 그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 간에 재산권 침해나 사회적 비용이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경진 진술인하고 임준태 진술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보면 야간이라는 시간적 속성으로 인해서 폭력집회로 변질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지난번 대체토론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이미 그러한 우려나 문제점들은 현행 집시법 가지고도 얼마든지 규제와 제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집회의 금지장소 규정이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규정이나 확성기 사용제한 규정 이런 모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현행 집시법만으로도 규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매우 명백해야 되고 또 현존하는지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해도 제한 수단은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술해 주신 말씀들을 보면,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다고 하면 지금 야간집회에 대한 제한 사유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명백하고 현존하는 그런 위험들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고요. 또 그런 위험들이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수성과 연관지을 만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 하나 의심스럽고요.

만에 하나 위험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현행 집시법 제한규정에 이미 충분히 규정되어 있는데 또다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지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이런 점들을 포함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제대로 논의하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김유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시간을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충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조 위원** 김충조 위원입니다.

서경진 변호사께, 변호사님의 진술 내용을 통해서 공공의 안녕·질서 이러한 것이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하는 것에 비중을 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집회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질서의 확보를 위한 공권력을 작동시키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폭력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시고요.

○**진술인 서경진** 예.

○**김충조 위원** 뿐만 아니라 사후처리에 있어서도 채증문제 또 사후통제 문제 이런 것도 곤란성을 야기시킨다, 야간집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생산손실, 교통비용, 일반 국민들의 직접적·간접적 피해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야간집회는 일정 부분 규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앞서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집시법 관련 조항을 보면 제5조, 8조, 11조, 12조, 14조 이런 관련 조항 등을 통해서 서 변호사께서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은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서경진** 제 생각에는 집시법에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 조항들이랑 집시법 제10조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집시법 제10조의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일정시간, 야간을 제한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충조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박주민 변호사께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집시법 관련 조항을 공술 내용에서 적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경진 변호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주시렵니까, 간단하게?

○**진술인 박주민** 예, 사실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실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까지 넉 달 동안 금지 통보한 것이 2008년 1년 동안 금지 통보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5월·6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승수 전 국민총리가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말을 한 뒤로 어떤 주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장소에서 하든지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즉 현행 집시법 규정으로는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집회는 모두 다 금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10조가 없다고 해서 무법천지가 된다, 입법의 공백이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 집시법 조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나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조 위원** 박주민 변호사께서 입법자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이 집시법 10조를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박주민** 원칙적으로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다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주간집회를 야간집회와 달리 취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야간집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정히 제한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야시간대, 한밤중 시간대 일부 시간대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주거밀집지역을 제한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주거밀집지역과 상가가 구분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행 법규로 해서도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을 구별해서 규제하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런 입법례를 따르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집회와 시위는 범죄가 아닙니다.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규제를 함에 있어서도 정교성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독일에서 계속해서 지켜져 내려왔던 헌법적인 원리이고 전통이고 우리나라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충조 위원** 입법자 입장에서 그렇지요, 그런 내용을 담고 그런 취지를 살려서 규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야간집회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등등 이것을 제한할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야간집회도 허용한다.

○**진술인 박주민** 예, 맞습니다.

○**김충조 위원** 주간집회와 똑같이……

○**진술인 박주민** 예, 맞습니다.

○**김충조 위원**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진술인 박주민** 맞습니다.

○**김충조 위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규제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박주민** 예, 일정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조항 12조 같은 경우도 질서유지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는 식으로 추가적인 조건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충조 위원** 임준태 교수께서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임준태** 사실은 집회·시위가 가장 많이 있는 서울광장 주변에 프라자호텔, 조선포텔, 프레지던트 호텔 등 많이 있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0시에 외국 손님들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12시가 되었던 10시가 되었던 간에 적어도 사람들의 24시간 생활리듬에 수면이 필요한 부분은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됩니다.

○**김충조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김충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 위원** 이범래 위원입니다.

서경진 변호사님하고 박주민 변호사님의 견해가 확실하게 서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서경진 변호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처럼 쓰셨는데 이런 겁니다. 입법자가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허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견해 맞으시지요?

○**진술인 서경진** 예.

○**이범래 위원** 그런데 박주민 변호사님은 법률에 의해서도 옥외집회의 시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규정체계와 연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정 반대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출발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결론도 달라지는 것 같

은데요.

서경진 변호사님이 이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진술인 서경진** 그런 취지로…… 예.

○**이법률 위원** 그러면 박주민 변호사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법률로서 그렇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진술인 박주민** 지난번 야간집회에 대한 헌재 결정을 보면 두 분만, 두 분만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더라는 명시적 의견을 밝히셨고, 7명의 위원 의견 중에. 그러면서도 심야시간대만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나머지 분들……

○**이법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행정처분으로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전허가나 이렇게 되겠지만 법률로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의 경우에는 사전허가제도라든지 헌법에 위반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거든요. 그런데……

○**진술인 박주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차 개정헌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2년 5차 개정헌법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차 개정헌법에 있었던 조항을 87년 헌법에 그대로 가져오면서 오히려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87년도에 개정되면서 개정 권력자의 의지는 법률로서 시간과 장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법률 위원**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말씀은 헌법재판관들의 그런 견해와는 다르게 법률로서도 그것은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진술인 박주민** 시간과 장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법률 위원**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시간제한을 하더라도 다시 거기에 장소적 제한을 해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진술인 박주민** 제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맞는데 정히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도 헌법 해석에 있어서 차이

를 보이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제한으로 가자 그리고 정교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가자라는, 어떻게 보면 대책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법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칙하고는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진술인 박주민** 그러니까 제 원칙은 주간과 야간집회를 차별하면 안 된다, 법률로 시간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원칙이고……

○**이법률 위원** 그렇다면 장소적 제한을 두는 것은 편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까지는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진술인 박주민**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하지만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된다, 정교하게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법률 위원** 박주민 변호사님께 또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제가 집시법 야간 금지 때문에 현행 여러 나라들이……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는데 최근 5년간 과연 야간집회가 있었나 사례를 살펴보니 거의 모든 나라가 야간집회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집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또 실제로 그런 나라들의 시민생활이 야간에 집회를 한다는 것은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야간집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박주민 변호사님……

○**진술인 박주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민주화를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점점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보장된 정치참여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판결에서 나온 것처럼 집회가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가 폭넓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근로시간이 가장 많고 야간에 집회를 제한하고 있는 프랑스에 비해서는 연 800시간 이상 많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집회를 해야 될 필요성은 OECD 어느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법률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많아서 야간집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가 이상한 것 같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많은 국민들이 야간에 집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 여론조사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입법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서 입법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변호사님?

○진술인 박주민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수자의 권리입니다.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곳에도 호소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최후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해 주면 좋겠지만 저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범래 위원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간집회를 허용해야 한다?

○진술인 박주민 예,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집회의 권리라는 것이 일부의 권리만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나중에 집회에 호소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이자 모든 나라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수단적인 권리이자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는 것이 당연히 맞고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선진적인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범래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위원님 여러분들 시간을 좀더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진술인들의 의견을 우리는 입법하는 데에 참고하는 것이…… 하니까 진술인을 위원님들께서 설득시키려고 하실 이유도 없고 진술인들도 자기의 의견만 피력하고 위원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진행은 피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김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오늘 집시법 공청회에 참석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민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야간집회나 주간집회를 구별하는 것은 맞지 않다, 12시 이후 심야집회를 규제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진술인 박주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야간집회

는……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진술인 박주민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김희철 위원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에 야간옥외집회 허가규정에 대해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개최되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현재는 2010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법을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도 동시에 내렸는데 현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합헌결정입니까, 위헌결정입니까?

○진술인 박주민 위헌성을 확인한, 원칙적으로……

○김희철 위원 예, 그렇지요. 위헌결정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바로 위헌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국가기관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재가 발간한 헌법재판소실무제요를 보면 기속력의 의미가 좀더 명백해 집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 유형으로 규범의 위헌성을 확인했든 간에 모든 국가기관은 위헌 법률의 적용과 집행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헌적 국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헌재가 정한 입법시한까지는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헌재까지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위헌적 국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박주민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헌성이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민과 국민을 처벌한다는 것은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철 위원 경찰의 위헌적 국가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르자면 경찰은 야간 옥외집회를 불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진술인께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주민** 죄송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잘못 들었습니다.

○**김희철 위원** 지금 현재 경찰의 위헌적 국가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르자면 경찰은 야간 옥외집회를 불허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술인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주민**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집시법 10조가 위헌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처벌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가 아닌 다른 규정들에 저촉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금지를 해야지 야간집회 금지 규정인 제10조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동석 진술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진술인 오동석** 허가제는 금지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금지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의 조건부 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 10조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도로써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오동석**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현행 집시법 10조는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야간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결정의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오동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두 분의 재판관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분은, 이게 논란이 된 것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권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이어서 그것

에 한정해서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이라고 하는 형식 때문에 상당히 좁게 해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회에서 입법자 내지는 국회의원들의 논의는 저는 그것보다는 더 기본권을 강화하는 쪽에서 아니면 더 넓은 관점에서 집시법 전체를 보고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분만 더……

○**委員長 趙鎮衡**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박주민 진술인에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야간집회 제한을 위한 적정한 시간대의 범위에 대해서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잉금지로 헌법 불합치라고 하셨던 두 분의 의견조차도 ‘야간’이 아닌 ‘심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야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이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용법상 그것은 12시부터 시작되는 한정적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김희철 위원** 경찰청 자체 통계를 보면 야간집회 개최 신고건수는 총 58건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허용된 건수가 40건이고 불허한 건수가 18건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집회 신고시 집회 종료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신고한 건수는 43건으로 74.1%를 차지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이에 대한, 진술인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한번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주민** 지금 현재 야간집회 신고를 거의 다 운동단체나 사회단체들 또는 여러 시민들이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은 거의 다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숫자 자체가 상당히 적고 신고를 하면서도 금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일찍 당겨서 신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통계 자체는 실질과는 관계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외국의 경우 야간시간대 집회 금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술인 박주민** 실제로 신고주의라고, 우리하고 똑같은 집회 규정체계를 갖고 있는 신고주의 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야간집회에 대해서 금지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23시까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예외를 두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일상생활 자체가 주간 위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야간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칭되는……

○**委員長 趙鎭衡** 중복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간략하게 하세요.

○**김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김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委員** 이은재입니다.

우선 네 분 진술인들 아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신 내용을 보면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양분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의 개선이 아직 요원하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됐고요. 특히 불법폭력시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경찰의 진압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념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의도된 폭력시위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적절하게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그와 같은 것도 아마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뜻에서 먼저 박주민 변호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진국의 사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야간에

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휴식권·수면권·통행권·영업권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진술인 박주민** 예.

○**李恩宰 委員** 그다음에 미 연방의 항소법원에서 최근에 오후 8시 이후의 퍼레이드에 대해서 허가를 금지한 그런 규정에 대해서 가두행진을 할 권리보다 시간, 장소, 방법 규정이 우선한다면서 전통적으로 야간은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이고 또한 야간에는 범죄방지·공공안전의 유지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합헌이다, 이런 것 잘 보셨지요?

○**진술인 박주민** 예, 그런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恩宰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박 변호사께서 ‘야간 폭력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진술인 박주민** 예,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수치는 2008년도 촛불집회가 가장 심한 야간집회라고 했었는데 전체 2300건이 넘는 것 중에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한 것은 13건에 불과하고 그것조차도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李恩宰 委員**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실제로 99년부터 2007년까지 대검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하루 중에 오후 6시부터 그다음 날 7시 사이에 61.7%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낮에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약 20.3%입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는 것이 낮에 일어나는 것의 약 3배입니다. 똑같은 대검찰청 발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독일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독일의 사례도 통계를 같은 연도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같은 연도를 비교를 안 하시고 서로 다르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사례를 우리가 97년의 경우를 똑같은 연도를 비교해 보면 독일은 폭력시위가 전체 2%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97년의 경우입니다, 6179건 중에서 664건으로 약 10.7%의 폭력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은 2%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자그마치 5%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야간집회를 어떻게 제한 안

하고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이런 결론으로 도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술인 박주민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李恩宰 委員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에서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입법례가 없어서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시위문화와 법준수 의식이 같다고 보시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05년 11월에 민주노동자 900여 명이 홍콩에서 열린 WTO, 거기 가서 시위를 하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시지요? 그런 사례 등등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경우는 폴리스라인을 침범했을 때 굉장히 엄격한 해산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국가의 국민을 위한 일이고, 사실은 시위에 왔던 분들도 그분들의 여러 가지를 해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이은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서경진 진술인, 답을 해 주세요.

내용 잘 봤습니다. 현재의 의견이 5 대 2 대 2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 위원들의 의견도 보면 서로 헌법과 해석에 대한 소신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현행 10조와 단서, 지금 목영준 재판관 보충의견에서 보면 단서라는 것은 결국은 제한을 더 완화하는 것 아닙니까, 성격이?

○진술인 서경진 예.

○이인기 위원 제한을 더 완화하는 것이니까 기본권 입장에서 보면 더 넓은 의미지요. 긍정적 측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경찰서장의 판단에 맡겨 버리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진술인 서경진 예, 맞습니다.

○이인기 위원 기본권을 더 악화하기 때문에 나

쁘다는 뜻이 아니고 푸는 것은 푸는 것인데 경찰서장이 그렇게 헌법의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몽땅 다 위헌이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지금 전반적인 국민 여론조사라든지 자료에 보면 야간에 집회가 불법으로 변질될 가망이 많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자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위헌 판결 다섯 분을 보면, 야간에 꼭 불법 폭력이 증가된다는 단정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사실 나옵니다. 오늘 경찰청 자료에 보면, 최근 몇 년간 통계에 보면 야간에 폭력으로 변질 가망이 더 높고 야간에 불법일 가망이 더 높다,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여건상 야간의 집회는 일정 부분은 제한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허용 예외규정 신설 여부는, 사실 이것은 본문에 있는 제한을 완화하는 성격인데 사전허가제는 논란의 불씨가 되니까 단서가 없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논쟁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서를 두는 것이 기본권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서경진 형식을 취할 때 현행과 같이 경찰서장이 허가하는 형식이면 위헌의 소지가 없다 이런……

○이인기 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논리인데 실질적인 면으로 볼 때는 단서가 붙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 더 넓어지는 것이잖아요?

○진술인 서경진 예, 맞습니다.

○이인기 위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기를 첫째, 10시부터 6시라고 하는 것을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을 뒤 가지고 동절기에는 제한시간의 폭을 늘리고 하절기는 제한을 좀더 줄이는 방법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조문에 의하면 8시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절기는 제한을 6시간 두고 동절기는 8시간 두고, 차별하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술인 서경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밤 10시로 하는 게 가장 명확하게……

○이인기 위원 저는 동절기·하절기를 구분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기본권을 넓히고 어떤 제한을 완화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전허가 금지에 대한 헌법 해석 때문에 단서를 뺐다면 오히려 본문에 법률로써 우리가 허가를 해서 허용해 줄 만한 파트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줄 부분들을 이미 법률로써 명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10시부터 6시까지 금지를 하는데 법률로써 ‘이런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이렇게 두면 어떨까요?

○**진술인 서경진** 저는 밤 10시 정도면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법률로써 예외규정을 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이인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강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임준태 진술인에게 여쭙어 보겠는데요. 박주민 변호사님이 현행 제8조, 11조, 12조, 14조로 법 개정을 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진술인 임준태** 지금 현재도 장소적, 집회시위 방법에 의한 것은 교통 소통이라든지 특정하게 100m 이내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제한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불 때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기정 위원** 왜 시간적 제한을 꼭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진술인 임준태** 야간이라고 하는 물리적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질서 파괴 가능성 또 과거에 불법폭력시위를 통한 우리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꼭 통행 금지를 연상시키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동석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인데요.

○**진술인 오동석** 예를 들면 소음규제는 주야간 관계없이 규제를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요건이 결함이 되어서 그 해당되는 부분만 기본권을 제한하면 헌법 위반 소지가 줄어들는데 소음규제는 주야로 다 규제를 나름대로 하고 장소는 장소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해 버리게 되면, 이것을 합집합으로 집시법을 구성하게 되면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고 하

는 것은 제대로 허용될 여지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강기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주민 진술인에게 여쭙어 보겠는데요. 서경진 진술인의 집회의 후진성, 불법·폭력성 이야기를 하면서 OECD의 통계연보에 따라 30개 나라 중에 27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아까 진술을 했던데요.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집회시위 준법 정착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긍정이 26, 보통이 30, 부정이 35,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 정도면 보통이 긍정 속에 들어가야 된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특히 ‘야간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서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에 60% 이렇게 나왔는데, 박주민 진술인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집회 문화의 후진성이나 폭력성에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박주민**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야간집회가 약 한 달 이상 지속됐지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 월드컵 같은 경우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흥분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우와 사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야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회를 하면 폭력적으로 돌변한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고 발생하는 경우도 현상을 보면 해산하는 경찰과의 충돌로 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같은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결정이나 법 개정을 볼 때 모든 집회·시위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현행 집회·시위는 모두 불법화될 수도 있고 폭력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규제해야 되겠고, 이런 규제적 발상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 법안은 정확히 ‘제2의 통행금지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요.

제가 81년 108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속기록을 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981년 12월 8일 내무위원회 회의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당시에 국민당의 김한선 위원님이 하신 발언입니다.

야간 통행금지 제도를 해제하고자 하는 건의를

합니다. 이유는 ‘첫째, 1965년 3월 1일부터 통금 해제를 실시한 충북의 경우 시행 첫 해는 범죄사건이 41.7%로 증가하였으나 강력사건은 오히려 36.9%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둘째, 국민들의 심리적인 중압감을 해소하고 통금과 같은 피동적인 제약보다 국민의식의 향상으로 자율적인 자제에 맡기는 것이 선진국 국민의 자세입니다’, ‘셋째, 행정적 제반 속박을 가능한 풀어서 국민 경제, 특히 오늘과 같은 경제적 불황기에 서민생활의 편익을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넷째, 다섯째 있습니다. ‘다섯째는 통금으로 인한 우리나라 대외적 이미지 손상을 개선합니다’, 즉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81년 때에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현재 결정에 여러 가지, 다섯 분과 5 대 3이다, 5 대 2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집시법에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이걸 왜 굳이 규제하는 건지…… 아니, 저는 제 홈페이지의 많은 자유게시판에 집회·시위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행복추구권, 소음권, 취침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다 옳은 이야기, 좋습니다. 아니, 지금 집회·시위를 국민에게 피해 주자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아무리 뜯어봐도 전제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집회는 폭력·불법일 수 있고, 반드시 어느 시점은 규제해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70년대 통행금지식사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술인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시다마는 아무튼 이 법은 좋지 않은 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강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갑윤 위원 말씀하시지요.

○**鄭甲潤 委員** 진술인 수고 많습니다.

우선 오동석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 제가 집시법 관련 상정할 때 사실 우리가…… 제가 선거를 여러 번 해봤는데 선거를 하다 보면 후보자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유권자에게 알려 가지고 득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것도 제한되어 있지요. 조금 오버하면 당장 창 너머로 얼굴을

내밀면서 하는 말이 ‘사람 좀 살자’, 다들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인 것이고, 아까 박주민 진술인께서도 아주 극소수의 주장도 보장해 줘야 된다는데, 우리가 어디까지나 모든 법은 국민이 지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선진국, OECD 국가 중에 시위를 하면서 쇠파이프나 쇠구슬이나 골프공이나 염산이나 벽돌을 사용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 통계 가지고 있습니까?

○**진술인 오동석**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鄭甲潤 委員** 없지요?

○**진술인 오동석** 예.

○**鄭甲潤 委員**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불가능성…… 이 중에 상당 부분, 100%는 아닌데, 다른 나라도 일부 사용하는 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지 않나, 저도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또 심지어 지금 현재 아마 계류 중에 있을 겁니다마는 시위를 하면서 정당한 자기주장을 하면서 마스크를 하고…… 마스크가 아닙니다. 복면, 마스크야 추우면 할 수 있지요. 옛날 같으면 최루탄 냄새 그렇다지만 요새는 최루탄 쓰지도 않으니까 복면을 하고 자기주장을 하는 것 이것 옳다고 봅니까?

○**진술인 오동석**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기본권 주체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鄭甲潤 委員** 그런데 결국은, 특히 주간에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복면하고 눈만 딱…… 우리 지금 현재 집회·시위 현장의 어떤 데 보면 이런 흥기를 반입하는 경우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통계는 더러 있고, 또 그다음에 사실 법이라는 것은 역사성과 그 나라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이것도 우리가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가정에 보면 잘 사는 집 한 달 가계비하고 못 사는 집 한 달 가계비가 차이 있듯이 실제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가 있습니까? 없지요.

또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동족으로서 이렇게 아마 지구상에, 다른 나라에는 종교적인 갈등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처럼 동족상잔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아직도 지금 이념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쩌면 아마 오늘 네 분의 진술인 중에 어떤 측면은 그것도 고려되지 않았겠느냐, 좀 미안하지

만, 제가 그것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전체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보나 보수나 국민 누구나가 다 지킬 수 있는 보편타당성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10대 강국에 진입했는데 그에 걸맞은 우리 품격도, 요즘 흔히 정부에서는 국격을 한 80여 가지 촉구했는데 다 읽어보지는 못 했는데, 국격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은 국민들이 하지요. 지금 현재 주장하는 진술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법도 어떤 측면에는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끔 하겠다는 게 아마 의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그런 법.

오동석 진술인 미안하지만 저녁에 주무시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보통?

○진술인 오동석 두세 시 넘어서 잡니다.

○鄭甲潤 委員 진짜 일 많이 하시네요.

그다음에 집에 들어가시면 휴대폰을 끄니까, 켜놓고 잡니까?

○진술인 오동석 요즘은 켜놓습니다.

○鄭甲潤 委員 보통 일반인들이 지금 전화해 보시면 저녁에 귀가하면 거의 다 휴대폰 끄니다. 요즘 또 일반 가정집 전화 없고 휴대폰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밤에 자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리 오동석 진술인께서는 열린, 평상시에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마 다 개인의, 근본적 이 법의 취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 자율을 침해받아서 안 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오동석 그런데 아까 이념적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지 간에 헌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폭력적인 집회 자체는 분명히 저는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폭력적인 것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그걸 규제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소음 규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면, 이미 소음을 규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충분히 그런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야간에 아예 이것을 금지시키는 것 자체는 그것은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제가 이념적인 요소 때문에 어쨌든 이런 입법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좀 글썽요,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鄭甲潤 委員 아니, 제가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다,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법을 제정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이지, 어쨌든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모든 논쟁이 진보·보수, 진보·보수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한국사회에는…… 요즘 진보·보수인데 그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은 제가 이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오해가 있다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鎮衡 정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석 위원 이윤석 위원입니다.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리다고 하면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위문화가 저는 또 많이 바뀌었다고 지금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의 과거를 보면 젊은 시절에 국가를 향해서, 독재자들을 향해서 신촌네거리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군사 쿠데타, 독재자, 전두환 물러가라’ 이런 어떤 주장들을 했던 것이 지금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시위문화가 당연히 그렇게 참여해서 야간·주간 상관없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제가 볼 때 밤에, 심야에 시위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할 일이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어떤 중대사안이 발생했거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저는 국민의 의사를 표출을 해야 된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일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시위꾼들이 아니라면, 출장시위꾼들이 아니라면 그걸 너무 그렇게 제한을 둔다는 것은 국가권력자들이, 아니면 정권 담당자들이 너무 자신이 없지 않는가, 자신이 없어 하지 않는가, 무엇이 두려워 할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런 불법 야간집회·시위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에 들어와서는, 방금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자료를 97년도 10%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야로 폭력시위가, 말 그대로 정부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폭력시위가 2006년도에 0.6%, 2007년도에 0.5% 그리고 2008년도에 0.7%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더군다나 주간에 대부분, 한 80%가 주간에 이루어졌어요. 지금이 퍼센티지 중에 0.2%만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폭력시위가.

그러니까 굳이 저는 이걸 어떤 무슨 테드라인을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이것 우리 국민들에게 말기면 되지 않을까, 무슨 중대사안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국가협상을 하고 들어온다든가 외교적인 어떤 협약을 하고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밤낮가리지 않고 우리들의 의견을 표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뭔가 자신감이 없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우리 서경진 진술인은 지금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서경진 시위문화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굳이 심야시간에,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윤석 위원 아니, 심야시간에 시위하라고 해도 안 해요, 문제가 없다면. 제가 방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놓은 작은 데이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협상이나 협약을 하고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쇠고기협상 같은 것 우리 밤낮 가릴 필요가 있습니까, 국민의 이익에 저해되는데?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들의 뜻과 다르게 어떤 정권이 뒤집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것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경찰의 대응 방안에도, 굉장히 많이 좋아했습니다마는 굳이 막으려고 덤벼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요. 채증인원만 확보를 시키고 최소한의 협력 병력만 배치하고 차후에 어떤 채증자료를 보고 선별을 해도 되고, 어떤 시민 안전선이나 저지선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생각들이 조금 뭐랄까요, 폐쇄적이지 않는가, 저는 지

금 각 진술인들 의견을 들으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돌아다니는 전문시위꾼들, 출장시위꾼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은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단지 어떤 국가의 위정자들이, 아니면 외교관들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협상이나 협약을 하고 왔을 때는 우리가 밤낮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떤 법적으로 제한을 둔다, 이제 우리 시위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97년도 10% 불법 폭력시위가 있었다면 2006년·2007년·2008년, 0.6%·0.5%·0.7%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이런 토론 자체가 굉장히 저는 국민의식 수준하고 맞지 않는 이상한 토론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국민 스스로에게 맡겨 두고, 지금은 법이 잘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폭력시위는 분명히 근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 어느 분이 아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시위 결과들을 보시면서 폭력성이 없었다고 지금 네 분 중에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법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 저는 하여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간 네 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권경석 위원 마지막이니까 추가로 조금 더……

○委員長 趙鎭衡 예, 계속하세요.

○권경석 위원 권경석 위원입니다.

오동석 교수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입법 도식을 포함해서 제도를 마련할 때에는 그 나라의 실정이라든지 특수한 여건 등등을 감안해서 그 바탕 위에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적절하지요?

○진술인 오동석 예.

○권경석 위원 다시 말해서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술인 오동석 예.

○권경석 위원 또 실제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도 여건이 다 다를 텐데 이런 점들을 전부 감안해서 적절한 제도가 이루어져야 실천 가능성과

제도 시행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시위 문화와 OECD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시위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십니까?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똑같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오동석 집회와 시위 문제는 그러니까 그 나라 사회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나 실정에 차이가 좀 있겠지요?

○진술인 오동석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의 틀 안에서 가능한 얘기겠지요.

○권경석 위원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세 가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12년간의 시위 결과에 대해 분석을 해 보니까 1년 평균 약 100여 건의 불법시위가 발생했고 그 중에서 50%가 야간에 발생했습니다. 야간에 불법시위 발생률이 50%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간의 불법시위 비율을 보니까 0.47%, 그리고 야간 불법시위의 비율은 14.45%입니다. 약 28배 정도로 야간에 발생하는 불법시위의 비중이 높았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야간에 차이는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오동석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12년간의 통계니까 전반적인 수치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객관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개인 구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통계……

○진술인 오동석 헌법의 기본권은 한 사람의 기본권으로부터……

○권경석 위원 어쨌든 나는 불법시위 결과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예요.

○진술인 오동석 예.

○권경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에 있어서 특히 OECD 국가에 있어서의 제도 운용의 차이를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선진국에서 불법시위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엄격합니다. 영국 같은 데는 영장 없이 그 자리에서 체포해 버립니다. 가차 없이 처벌합니다. 이런 공권력 집행의 강도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결과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진술인 오동석 ……

○권경석 위원 나중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뒤에 할 말씀 있으면 제 질의 끝나고 계속 답변을 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야간 시위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의 차이입니다. 저도 외국에 여러 번 가 봤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밤 9시 되면 통행을 안 합니다. 신변에 위협을 받으니까 통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위라는 것에 대해서, 야간 시위에 대해서 선진국의 인식과 우리나라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밤 12시, 1시, 2시,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물론이고 LA, 뉴욕 한번 보십시오. 밤 9시에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 객관적으로 현실이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사회적 여건을 갖고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와 똑같은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확실히 조치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오동석 교수께서는 최소한의 제한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아까?

○진술인 오동석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경석 위원 아까 최소한의……

○진술인 오동석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권경석 위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제한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진술인 오동석 예.

○권경석 위원 다음 박주민 변호사님!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예, 말씀하시지요.

○권경석 위원 24시간 집회·시위 자유를 반드시 허용해야만 그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견해는 아니시지요? 24시간……

○진술인 박주민 저는 24시간 하기에,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 시간으로 일률적으로 모든 장소에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권경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기

본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견해입니까?

○진술인 박주민 그런데 시간으로 해서 주간, 야간을 제한 차별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제 원칙적 입장입니다.

○권경석 위원 방법면에서의 차이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진술인 박주민 ……

○권경석 위원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설은 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소음 피해를 줄이고 야간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법상은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연설 금지입니다. 이런 조치도 우리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공공질서라든지 국민의 행복추구권, 휴식권 이런 것들도 거기에 못지않게 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헌법적 취지에 따라서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는데, 이 경우도 집회·시위의 경우도 이런 논리가 저는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박주민 저는 국민투표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있어서의 야간 연설 금지도 헌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경석 위원 그 부분은 헌재가 다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법의 형평성 문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 못지않게 국민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네 분의 변호사님, 교수님 진술을 축 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 여기는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박주민 교수님, 서경진 변호사님……

○진술인 박주민 저는 원칙적으로는……

○권경석 위원 조금 다릅니까?

○진술인 박주민 예,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입니다.

○권경석 위원 알았습니다.

○진술인 오동석 저는 이 법안은 최소 제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권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정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趙鎭衡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나뉠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박주민 변호사님,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심야시간을 12시대로 기준해서 야간 해석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진술인 박주민 예.

○委員長 趙鎭衡 그런데 내 생각은 심야시간대이라고 하는 것을 한 10시 정도부터 한 4시 정도까지를 심야시간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대개가…… 보편적인 분들은 대개 한 10시 정도 되면 취침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젊은 분들은, 야간 오동석 교수님도 2~3시 되어서 주무신다고도 했지만 밤새 안 주무시는 분 많아요. 그리고서 새벽부터 한 나절 자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대개는 심야시간을 한 10시부터 새벽 4시 이런 정도까지 자고 그리고서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심야시간대를 그렇게 굳이 해석을 너무 하시는 것은 지금 이 법에 집회의 자유권을 보장해 주라고 하는 데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말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또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집회하는 분들에 대한 권한도 충분히 보장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는가 하면 수면권이나…… 이제 집회권도 기본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수면권 이런 것도 기본권이거든요. 기본권을 여하튼 같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충을 찾은 것이예요. 그런데 법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항상 절충을 찾아서 만들게 되지 어느 한 쪽의 절대적 의사를 반영해서 법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물론 박주민 변호사는 본인의 절대적인 이런 견해만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계층을 충분히 대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까지는 내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인데, 제 말씀에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박주민 일단은 목영준 재판관이 진술한 것을 보면 야간이 아닌 심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委員長 趙鎭衡 야간이라고 하면 해질 때부터가 야간인데 그것은 아니지……

○진술인 박주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은, 단어의 해석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키피디아라든지 국어사전을 뒤져본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용법상 밤 12시부터 시작되는 밤 한가운데 주위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칙적으로 야간 집회를 금지할 필요가, 특별히 차별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미 집시법에 5~6개 조항에 충분한 제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김유정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유정 위원** 직접적으로 진술인들께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야 될지 그 성격을 규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침에 경찰청에서 아마 위원님들 다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라는 이 서베이(survey)한 내용을 전문을 보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보도된 기사도 하나 보내 왔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아까 강기정 위원님도 그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습니까마는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것을 일단 불법 폭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설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경찰청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 오늘 공청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20일부터 22일 사이에 급박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들께 보내오신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설문을 할 때 설문의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집시법 개정안의 야간 집회 시간제한 규정을 둔 이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늘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작년 9월에 있었던 헌법불합치 판결을 전제로 해서 그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팽팽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론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의 관계자가 나와 계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계실 것이라고 전제하고요. 아니면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시민의견조사에 대해서는 그런 속된 말로 차 떼고 포

떼고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시법에 대해서 야간 옥외 집회 금지에 대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다,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를 이유로 헌법불합치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 내용에.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다, 또 현행 집시법으로도 오늘 논란이 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 우려할만한 사항들 수면권이건 시간제한이건 장소의 제한이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 폭력이건 간에 그런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 있다라는 것을 어떤 설명도 이 설문지 안에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집회·시위에 대한 준법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법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경찰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맞는 얘기만 지금 적어 놓았지요, 이것은. 불법 폭력 집회를 찬성하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누구도 그것은 찬성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닌데 경찰청이 ‘야간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허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우리가 이 집시법 개정안을 가지고 법안 상정을 하고 대체토론을 하고 공청회를 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모든 전제와 앞뒤를 다 빼고 ‘집회를 허용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이러한 질문 설문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갑자기 20일부터 2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도자료 마지막 부분에 경찰 관계자가 ‘이 같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기사를 같이 보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질문내용도 그렇고요 결과도 그렇고 경찰청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해서 이 결과를 위원들이 무엇을 참고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이러한 방식의 여론조사,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관련법이기 때문에, 그 공청회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김유정 위원 말씀도 일리가 충

분히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시기에 그것을 하면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잘한 처사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재형 위원님 말씀……

○**홍재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예,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홍재형 위원** 4명 진술인, 12시가 넘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어차피 이 법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개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박주민 진술인이 우리 상임위에 있다고 그러면 헌법불일치 판결을 안 받을 정도로 법안을 만든다면 그러면 시간대를 대개 12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진술인 박주민**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시간제한을 뒤야 된다면 심야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 누가 보더라도 심야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시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논리 투쟁하는 차원이 아니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심야로 해서 한 12시 정도로 하면 위험이 안 되겠느냐를 제가 여쭙 보는 것입니다.

○**진술인 박주민** 편하게 말씀드리면……

○**홍재형 위원**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진술인 박주민** 새벽 2시부터 4시 정도 어떨까요?

○**홍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단서조항을 없앴거든요, 새 개정안에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박주민** 현재 경찰들이 자의적으로 집회의 허가 여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없앤 부분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재형 위원** 서경진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주민 진술인, 오동석 진술인하고 서로 다르신데, 법을 만들었는데 또 위험판결이 나면 법안 내신 위원장님도 망신이고 우리 위원회도 망신이거든요. 어떤 선에서 하면 이것이 위험판결이 안 나고 되겠습니까?

○**진술인 서경진** 제 생각에는 심야시간을 10시

이후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심야시간을 12시 이후로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0시 이후에는 취침에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10시 정도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도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0시까지 제한을 하더라도 대규모 시위의 경우에는 해산하는 데도 한두 시간 걸리기 때문에 한 10시 정도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홍재형 위원** 한두 시간 걸리면 12시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10시로 박을 것 없이? 한두 시간 걸릴 것 생각을 하면……

오동석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오동석** 그러면 시간대 규정을 만약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라고 하는 규정을 한다면 10조를 아예 삭제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집시법 8조3항에 아까 말씀드렸던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에 그 문구를 집어 넣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소음규제도 그러한 시간대의 경우에만 소음으로서 규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바꾸면 기존의 집시법이 안고 있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규제하고자 하는 폭력적이거나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절한 절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재형 위원** 그쪽 조항에다 넣는데 그때 시간대는 어떻게, 시간대를 얘기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진술인 오동석** 지금 제가 시간대를 헌법적인 관점에서 좀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은 시간대를 가지고 다른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금지를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존 집시법 중에서 어쨌든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씀하신 대로 취지를 살려서 야간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기존의 집시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위험적인 부분을 해소시키면서 그야말로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항에다가 그 문구를……

○**홍재형 위원** 문구를 넣는데, 지금 10시나 12시나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진술인 오동석** 그 문제는 그러면 차라리 아무런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10시도 상관이 없고 12시도 상관이 없습니다.

○**홍재형 위원** 그러니까 시간대는 완전히 없애고, 그러니까 시간대는 완전히 없앤다는 얘기지요?

○**진술인 오동석** 아니지요. 시간대를 포함을 시키는데 그 시간대라고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누구든지 집회나 시위를 열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기존의 법에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서는, 예를 들면 수면권이 침해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지시키는 사항에다가 시간대를 정해서 그 요건을 부가하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 확장하고 정말 수면권에 침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금지시키는, 그러니까 그것은 꼭 12시가 아니어도, 10시여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대만이 아니고 다른 요건하고 부가해서, 아까 말한 교집합으로 해서 접근을 해 나가야지 이것을 합집합으로 해 나가게 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설 자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재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임준태 진술인도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임준태** 사실 헌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디를 가도 설득력을 더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법과 질서를 현실에서 집행하는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참 어렵습니다. 저는 경찰법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헌법학자들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도, 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입법자들의 의견을 담은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야간집회라고 하는 특수성이 결국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이슈들입니다. 외국에는 8시 되면 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홍재형 위원** 그 말씀은 죽 많이 하셨고, 입법정책상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적인 것보다, 그런 설명보다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정을 해야 헌법불합치나 불일치나

위헌 소지가 없으면서 또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 조진형 위원장이 낸 그것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어디냐 그런 말씀입니다.

○**진술인 임준태** 저는 합리적 시간대라고 해서 10시에서 오전 6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되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재형 위원** 저쪽에서는 심야대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10시가 심야대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가면 또 위헌판결 안 나겠습니까?

○**진술인 임준태** 그 10시라고 하는 증거는 제가 더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모든 시민사회의 활동의 금지시간이 10시입니다. 공원에서 노는 시간이라든지 다 제한이 10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12시라고 하는 특수한……

○**홍재형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긴테……

아까 박주민 진술인은 미국에서는 시간제한 없다고 그러셨지요? 폴리스라인만 안 넘으면……

○**진술인 박주민** 시간제한이 있는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는데요 시간제한이 있는 주는 주로 소규모 타운입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홍재형 위원** 소규모 타운에만 그렇고……

○**진술인 박주민** 인디언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락들은 타운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런 규정을 두는 경우는 있지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홍재형 위원** 그러면 가능하시면 임 진술인께서 자료를 주시고 박주민 진술인도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鎮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해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委員長 趙鎭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3.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4.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委員長 趙鎭衡**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윤상현 의원·강기정 의원·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3건에 대한 공청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3건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으로서 현행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공휴일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께서 평소에 쌓으신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차후에 입법을 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김남조 교수님이십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태 연구원이십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이십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경제조사본부장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공청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고 진술이 모두 끝나면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 김남조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남조**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김남조입니다.

저는 대체휴일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첫째, 대체휴일제 자체가 실질적인 여가시간의 증가, 과도한 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실질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 이는 곧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대체휴일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지금과 같이 여가와 관광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국민의 심리는 아마도 이런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해서 더욱 삶의 질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경제적·사회적 심리 속에서 국민은 안정감을 찾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안정감이 일자리, 직장으로 돌아와서 직장에서는 높은 생산성과 직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체휴일제도의 도입이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에 일차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찬성합니다.

또한 우리의 대체휴일제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이틀 또는 3일간의 공휴일이 몰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휴일이 몰려 있게 되면 사실 한정된 자원들을 이용하는 데 좀 불균형하게 이용

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휴일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자원을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4년 7월부터 우리가 주5일 근무, 40시간 근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에서 시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는 실근로 시간 단축 저해요인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보시면 주 5일제,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으로써 우리 경제 또한 근로자의 여러 가지 태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응답한 부분이 한 60% 됩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조사를 했었는데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었다’가 한 60%로 나타났고, 물론 단계적으로는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는 단점도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를 보시면 그 당시에는 짧은 시간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장기간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떠한 측면에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더 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율과 근로시간의 관계를 추정했는데 1시간이 단축되면 재해율이 0.025%포인트로 감소된다는 결과도 도출했습니다. 결국은 근로시간의 감축 또 여가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재해율 감소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좀 장기적인 추세로 도출해 놓으면 더욱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한 만큼 사용하느냐고 질문했더니 한 56.5%가 부여 일수만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43.5%의 응답자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추가적인 수입 때문에, 두 번째는 일이 너무 많아서, 세 번째는 휴가를 쓰지 않아서, 네 번째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응답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휴일제는 국민들의 소비활동을 유발시켜서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이바

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 성장을 해 왔습니다. 아주 혁혁한 산업 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사회상을 본다면 제조업에서 점점 서비스업으로 넘어가고 있고 국민이 여가시간을 즐기는 현황도 서비스업의 상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결국은 제조업, 2차 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구조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도 벌써 이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제조업 위주의 그런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반문을 해 봅니다.

결국은 서비스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대체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좀 더 일찍 산업구조의 개편을 미리 정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고 이것이 곧 다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음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성태 박사께서 국내 관광수요 확대에 대한 휴가·공휴일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본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성태 박사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정보통신이 자유로운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또 3차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2316시간입니다. 굉장히 높지요. OECD에서 가장 높은 노동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의미이고 결국은 우리의 산업구조가, 2차 산업이 그대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가겠는가라고 반문해 보면 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기업들은 아마도 이런 인건비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설비를 자동화하는, 더 생산성이 높은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아왔듯이 결국은 설비를 자동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인력에 의존했던 그런 인력들이 사회 밖으로 나오게 됩

니다.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제조업의 위기에서 보아왔듯이 서비스 산업이 육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맥킨지보고서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로 경제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산업 구조에서 융통성 있게 제대로 정하지 못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휴일제의 도입은 단기적·미시적으로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로 인해 사업체에게는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겠으나 장기적·거시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사전 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같은 영역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를 건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현상, 대체휴일제에 찬성과 반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근로시간과 나타날 수 있는 갈등,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사측과 노측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추가되는 휴일은 아마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의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휴일을 즐기지 않고 임금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과 노측이 합의를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대체휴일제 도입·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문제는 중소기업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적인, 대체휴일제에 참여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초과근로시간을 임금보전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라든가 정부의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체휴일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김남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본부장님 진술해 주시지요.

○**진술인 황인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언할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을 10분으로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약간 넘더라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자료는 71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 법률 현황을 보시면 정부가 공휴일에 관해서 시행 중인 법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이 법률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휴일을 사적계약의 영역으로 대부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성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의 휴일·휴가와 관련한 법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휴일이라는 것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아니고 사업장별로 근로환경에 맞게 주 중 어느 요일을 지정하든지 하루를 쉬게 해 주고 그날 8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보면 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휴일근로는 주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이 법안에서 얘기하시는 대로 공휴일을 국가가 법률로 강제했을 경우 그 휴일에 일을 하면 50%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연차 유급휴가라든가 생리휴가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일반 기업들은 대부분 그대로 원용을 하고 이날을 휴급 휴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사업장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은 공휴일에 관한 3개 법률안, 오늘 논의가 되는 3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요,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공휴일로만 지정이 가능하지 이 휴일을 유급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법률적 규정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요일을 무조건 휴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뒤에 통계표가 나와 있습니다라는 평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더라도 일요일에 일을 시키는 경우 50%의 휴일근무수당을 가산지급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도입에 따른 휴일 수…… 이 부분 일요일에 하는 부분에서 비용 증가가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대체공휴일을 도입함으로써 해서 2.2일, 저희가 평균을 내봤는데 2.2일 정도 휴일이 증가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생산차질분이 있습니다. 먼저 일요일에 일을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표를 보시면 전체 근로자 수에 교대제 사업장의 비율 그리고 교대제 근로자의 비율 그리고 교대제를 하는 경우 일요일에 근무하는 근무일 수 연간 35.4일입니다. 여기에 시간당 정액급여를 곱해서 계산을 했을 때 휴일근로수당만 총 3조 4107억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증가하게 되면 그다음에 증가하는 부분이 퇴직금에 대한 추가부담액이 생기는 것이고 이 부분이 또 1조 8169억 원입니다. 이 두 개를 합했을 때 5조 2276억 원이 되고 오늘 매일신문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만 지난번 저희 경총에서 발표했던 1조 4000억 원에 대한 비용은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유통업하고 석유화학업종 등 일부 4개 업종만 계산을 했던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퇴직금제도를 적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다음 페이지에 다시 퇴직금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퇴직금 부분은 법정퇴직금 지급률

로 계산했을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늘어나고 이것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그리고 법정 퇴직금 지급률을 계산했을 경우에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증가분입니다. 이것 역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을 계산했을 때는 기업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대체공휴일이 도입됨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일요일이 공휴일로 됨으로 해서 생기는 비용부담이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되었을 경우에 광업 및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평균 생산차질액입니다. 이에 관한 자료는 76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1일 생산량을…… 연간생산량을 추계산하고 이것을 365일로 나누어서 1일 생산차질액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휴일이 2.2일 증가했을 경우에 총 생산차질액을 계산했는데 이 부분이 6조 7254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공업 생산유발계수를 곱한 수치가 12조 963억 원이고요, 위에 있는 5조 원 가량의 비용을 더했을 경우에 총 기회비용이 17조 3239억 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이나,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는 저희가 봤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지출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77쪽에 있는 표라든가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산유발계수를 감안했을 경우에 17조가 넘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우리의 노사관계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근로자들은 휴일=소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근로자들의 인식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용자들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을 받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유급휴일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행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라는 노사분규의 원인이 잔업을 울

산공장만큼 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2002년도에 근로시간 단축, 주40시간제가 법제화되기 전에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타결한 주40시간 단체협약안을 보면 토요일까지 다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근로시간만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초과되는 OT수당이 임금을 인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바는 우리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아직까지 예측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산업현장에는 과거 80년대 말에 올림픽 전후해서 도입한 적이 있었던 대체휴일제가 단체협약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휴일에서 제외된 식목일, 제헌절 등이 이미 남아있고요, 월차휴가가 남아있는 사업장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현대자동차의 휴가규정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유급휴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휴일은 다 쉽니다. 다 쉬고 여기에 제헌절, 신정을 1월 1일·2일 이틀간 쉽니다. 그리고 설날 나흘간 쉬고 추석도 나흘입니다. 단체협약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미 대체휴가,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그다음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차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하계휴가가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 부여하도록 그렇게 단협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밑에 제가 베드 케이스(Bad Case)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가족계획 시술 시에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단체협약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금속노조 단체협약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두꺼운 자료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가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일제도 변경이 민간기업에는 바로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한번 생긴 휴일은 다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15일에서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평균 부여일수가 18.6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7.6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11일은 돈으로 보상받는 현실입니다. 그

래서 연차휴가 사용률이 약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로 할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대체공휴일제라든가 공휴일을 법률화하는 문제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먼저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하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추진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률안인가라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대체공휴일을 도입했을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층은 사무직이나 정규직뿐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43%에 달하는 임시일용근로자 그리고 영세중소기업의 근로자, 도시지역의 자영업자 등은 소득 감소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일당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도 다 여기에 포함되고요. 특히 영세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일감이 부족하면 사업주들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을 시키기보다는 그날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이 날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나 택시운전수 같은 경우 도심지역에 있는 분들은 매출이 분명히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소득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또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늘거나 휴일이 늘어나서 결국은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유리한 계층과 불리한 계층이 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는 유리하고요. 강력한 노조가 있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도입되어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이미 다 충분히 쉬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휴일이 증가하거나 또는 인건비가 늘거나 둘 중의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보다 상황이 나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에는 일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감이 부족한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자영업자나 택시기사 등 도시의 어려운 계층들에게도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통계자료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 1600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10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0.6%, 97만 명이고요. 이것을 대기업으로 되어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도 218만 명에 불과합니다. 총 13.4%의 근로자들이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66%이고요. 더 우려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약 486만 명이 근무를 하고 이 근로자 비율이 3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청의 취업자 자료를 봐도 상용근로자가 40% 그리고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30%,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약 30%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층은 많아야 40%를 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회사로 어떤 자영업자분이 전화를 하셔서 ‘지난번 주 40시간 근로가 법제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매출 감소를 입었다. 그런데 또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나가서 잘 좀 얘기를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오면서 택시기사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대체휴일제 도입되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있는 사람들 좋은 제도지 우리 같으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의 내용은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비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의 휴일은 기업과 근로자 자율에 맡깁니다. 단체협약이나 개별 근로계약 등 사적 계약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본이나 호주를 제외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영국은 별도의 법이 없고 관례적으로 은행의 휴일을 따르는 게 관례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휴일은 하루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들 나라들이 대부분 대체휴일제는 도입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라는 휴일일수가

우리나라가 좀 많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을 일요일과 그 외 공휴일 14일을 합하면 66일입니다. 여기에서 2.2일 빼면 63.8일이 되고요. 이것은 선진 6개국 평균 63.2일에 비해서 0.6일이 많은 숫자입니다. 여기에다가 근로자의 날 하루를 더 포함시키면 1.6일이 선진국보다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또 휴가제도까지 고려한 부분은 물론 근로자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라는 최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우리나라가 선진 6개국 평균에 비해서 5.5일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 2001년과 2005년도에 휴일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2001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수치가 전부 휴일 확대에 의한 효과라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라는 2005년도에는 세계경제가 호황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는 분명히 대체휴일제 도입이 경제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향후 10년 동안 휴일이 대체휴일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또 일부 법안이 토요일까지 대체휴일을 도입하는 법안이 나온 게 있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일요일하고 중첩되는 게 평균 2.1일이고 기타 공휴일하고 중첩되는 0.1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일이고요. 그리고 토요일과 겹치는 날은 3.9일입니다.

통계자료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87쪽의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공휴일에서 식목일과 제헌절을 2006년과 2008년부터 각각 삭제한 것은 주 40시간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삭제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鎮衡 황인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더블로 쓰시면서 충분히 입장을 반영시키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셨고 그리고 또 여러 업계 쪽에 중소기업 쪽이나 이런 어려운 쪽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느라고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태 연구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태 연구원입니다.

먼저 행안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발표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 수는 10일이고 이에 따른 공휴일 수는 연휴를 포함해서 총 14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 날짜지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과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사회 일각에서 대체공휴일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공휴일 수가 14일이기 때문에 외국보다 많다’라는 주장을 계속하십니다만 명목상 공휴일 수가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휴일 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의 경우에 실제 공휴일 수는 6일이었습니다. 8일이 중첩되어서 그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본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10년을 보더라도 그렇고 향후 10년을 보더라도 14일 전체가 보장되는 경우는 단 1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휴일 수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공휴일 수의 편차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휴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인데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2008년 기준했을 때 2134시간입니다. 이것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도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휴가나 휴일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외국 자료들을 보시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 나오는 ‘유러피안 인터스트리얼 릴레이션스 옵서베이토리(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 자료를 보시더라도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휴가일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이 거의 한 10년을 근속근무를 해야지만 휴가가 19일 정도가 주어지는데 독일은 1년만 근

무를 해도 30일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자유시간이 많다, 휴일이 많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통계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0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이로 인해서 직장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공무원의 경우에 2004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714명이 공무상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여기서 과로사가 전체 42.2%를 차지하는 30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창 젊어야 할 30~40대 남성·여성 직장인들이 업무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사회 일각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정부부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을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내라고 패밀리 데이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기업이나 학교에서 재량휴일제 같은 것을 시행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설날이 상당히 날짜가 짧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 날을 학교 자체적으로 휴무일로 지정해서 휴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보장해 주어야 될 그런 문제이지 이 책임을 그냥 기업이나 학교 이런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인식들은 국민 사이에서도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이 직장인을 상대로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80%가 찬성을 했고, 저희 연구원뿐 아니라 취업포털 ‘스카우트’나 그리고 ‘인쿠르트’ 이런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96%에 달하는 국민들이 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76.6%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일 수도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도 취득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경총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면 업무과다나 직장 내 휴가를 쓰

지 못하게 하는 경직적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문조사뿐 아니라 이미 조선일보나 여러 언론에서도 조사를 해서 공개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문화관광연구원이기 때문에 관광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내관광을 함에 있어서 제일 한계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경제적 문제도 있겠습니까마는 여가시간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관광공사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매년 발표를 하는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이 되어서 여가시간이 확충될 때 관광활동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저희 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약 37.5%가 '국내관광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전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에 자유시간이 다소 늘어났을 때 우리나라 관광수요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관광에서 총 지출한 지출액은 15.7조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가시간이 조금 더 확충된다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경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민간소비 활성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경기불황의 경험을 했는데요. 사실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소비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민간소비가 부실하게 되면 기업활동도 위축이 되고 실업률이 증대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90년대를 보시면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이 약 106% 정도였는데요. 2000년대에는 65.4%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도 내수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평균이 97% 되는데 우리는 여기보다 약 30% 더 낮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수출주도형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령 외부

적으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때는 우리나라 경제는 이것을 완충할 장치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몰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출주도형에서 대체공휴일제, 휴일제 도입으로 인해서 민간소비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정당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처음에 김남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제조업 부분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해서 서비스 산업을 부흥시켜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 산업 부분에서 고용을 창출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향후 경제정책으로도 타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공휴일제도 개선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 복지의 증진이 있을 수 있고요. 가족 간 결속력이 제고되고 그리고 업무상 스트레스 해소로 의료비용에 대한 지출 감소 이런 것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일 수 편차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명절 시에 귀성 국민에 대한 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감소되어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 이것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막강한 국가적인 편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근로환경 개선인데요. 많은 연구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적절한 조율이 있을 경우에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택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 생산성이 제고되는데 이것은 근로에 따른 피로현상을 줄여서 노동공급 확대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휴일 보장은 근로자의 회사 귀속의식을 향상시키고 노동생산성 및 노동현장의 안정성을 제고한다고 이규만 등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委員長 趙鎭衡** 가급적이면 시간 좀 맞춰 주시면 좋겠어요.

○**진술인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국내관광 수요 확대에 따라서 사회 편

익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공휴일이 확대되었을 때 국민들이 국내관광을 시행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통해서 휴일이 4일 확대가 되고 모든 국민들이 4일 동안 국내관광에 투입이 될 경우에 경제파급효과는 총 11조 6000억 원이고요, 고용창출효과는 약 13만 95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휴일 1일당 국민 국내관광의 경제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했는데 총 경제파급효과는 약 3조 7619억 원으로 나왔고요, 고용창출효과는 약 4만 5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실제로 그러면 ‘대체공휴일제도를 통해서 4일의 휴일이 확충되었을 때 얼마만큼 국내관광에 투입을 하시겠습니까?’라고 조사를 했는데 약 1.5일을 하겠다고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총 경제파급효과가 약 7조 820억 원이고요, 고용창출효과는 약 8만 528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1.5일과 4일간의 차이는 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문화부와 연구원 그리고 관광공사, 관광업계가 향후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국민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도……

○**委員長 趙鎭衡**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진술인 이성태** 예.

이미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도 공휴일제도를 통해서 이런 상당한 경제파급효과가 검증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지봉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임지봉**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 임지봉 교수입니다.

앞에 진술인분들께서 주로 고용이라든지 임금, 생산성 같은 경제적 관점에서 공휴일 법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를 해 주셨다면 저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의 관점에서 과연 이 공휴일 법안이 국민의 법적인 권리 그중에서도

특히 헌법적인 권리로서 평등권 혹은 휴식권의 보장 내지 실현과 관련해서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지 혹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진술하신 세 분께서는 법안의 분석을 안 하셨는데, 저는 일단 지금 법안 세 개가 올라왔는데 분석부터 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법안이 대략적인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기존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여기에 규정되어 있었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올리자는 내용이 중요한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공통적인 내용이 앞선 세 분의 진술인들께서 주로 많이 평가를 해 주셨던 대체휴일제, 대체공휴일제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는데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별적인 공휴일과 관련해서 강기정 의원안에 보면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에 넣자’ 그것을 법률에 정하자는 것이고, 양승조 의원안의 경우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추가하자’ 이런 점에서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이나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추가할지 말지는 그야말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책적 판단을 내리면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세 법안에 공통점으로 담겨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이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두자는 문제, 그다음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은 사실은 헌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중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두는 문제는 평등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평등권은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평등하다는 의미는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 기준 없는 차별, 즉 자의적인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 합리적 기준 없는 차별만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학설과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의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심사, 즉 합리성 심사가 평등권과 관련한 위헌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두지 않

고 현행처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휴일에 쉴 것인가 말 것인가, 즉 기본적으로 그 공휴일에 휴무 여부를 개별 기업에게 맡겨 두게 되는 것으로서 공휴일에 쉬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국민들 간에 차별을 발생시킵니다.

즉 어떤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휴일에 쉬는 근로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쉬지 못하는 근로자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게 차별인데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와 공휴일에 쉬는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가해지고 있는 것인데 그 차별이 있어도 되는 합리적 기준이 있느냐,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와 관련해서 공휴일 휴무 여부를 개별 기업의 판단에 맡겨 놓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국민의 평등권을 합헌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현행처럼 대통령령에 둘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휴일에 관한 적용을 균등하게 받게 함으로써 공휴일에 모든 국민이 휴식을 취하고 이를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 중요한 권리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헌법 11조에서 평등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두는 것이 평등권 실현에는 더 부합한다. 물론 현행처럼 대통령령에 두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평등권 실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에 두는 것보다 법률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안의 중요한 공통점이었던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사실상 우리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 중에서 휴식권의 문제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수의 학설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여기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행복추구권)라는 기본권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이고 적극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행복추구권을 정의하면서 행복추구권 안에서 바로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그다음에 휴식권 같은 것을 뽑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에서 더 많은 새로운 기본권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롭게 생존할 수 있는 평화적 생존권도 행복추구권이고 또 방금 말씀드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권도 행복추구권이고, 햇볕을 쬐일 수 있는 일조권도 행복추구권이고, 수면권 스포츠권 등등도 행복추구권에서 도출할 수 있다는 견해를 학자들은 가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판례는 이 중에서 휴식권만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9월 27일 판결 등에서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헌법 10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세부적인 한 권리로서 휴식권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즉, 휴식을 통해서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외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대체공휴일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하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공휴일 휴무를 통해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마다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일수가 다르고 또 최소 세 번 이상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쳐서 연중 공휴일 일수가 사실상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충분한 휴식 기회를 제공할 수 없어서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휴무일수가 사실상 늘어나면 기업의 전반적 생산성이 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을 두는 본래의 취지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휴일을 두

는 본래의 취지가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휴무일수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재충전으로 인한 능률 향상으로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음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휴식권이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기에 때문에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역행하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국민의 휴식권을 제한하고 후퇴시킬 수 있는 명백한 공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런 공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공휴일에 관해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이를 규정하자는 세 법안의 공통 내용은 평등권 실현에 부합하는 것이고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행복추구권으로서의 휴식권 보장과 실현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임지봉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진술인의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 1인당 5분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진술인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소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남 위원** 공청회에 자리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황인철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OECD가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30개국 가운데 가장 많고, 여가활동 지출 수준은 4.6%로 25개국 중 2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은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비용, 저생산성을 극복하고 근로자 건강보호와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술인 황인철**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개설되어 있고요, 제가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2100시간이고 이것이 과도하게 길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가 볼 때 근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휴식권은 충분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휴가하고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중복되는 날짜들을 다 빼더라도 130일 가까이 됩니다. 130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5일 근무를 하고 격주로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잘 활용할 경우에 1년 중에 1개월 휴가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근로자 인식의 문제 그리고 또 사용자 측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도적으로는 초과근로 임금할증률 부분이 있고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임금으로 보상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로자들이 소득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업을 보장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있을 정도로 소득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용자 측의 문제입니다.

고용유연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채용을 하기보다는 있는 근로자에게 일을 좀 더 시키고 급여를 더 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초과근로 임금할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자 그리고 연차휴가 보상제를 폐지하자고 했는데 지금 노동계가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화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라든가 의식이 가족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것을 아내가 싫어한다든지, 남편들이 집에 일찍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식조사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인 부분과 함께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패러다임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말씀하신 행복추구권

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소남 위원** 다음은 이성태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노동생산성 저하와 개별 기업의 특수성·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부정적인 시각과 국내 관광소비가 증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누어지는데 진술인께서 동의하는 입장이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저도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통해서 가장 효과가 큰 부분이 바로 민간소비 활성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체공휴일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간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안 늘어날 것이다 확답은, 분석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만 우리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통해서 이 결과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했을 때 민간소비가 확실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유통업이나 엔터테인먼트업, 오락업 이런 부분이 증가했고 여기에 따라 연관 산업들도 매출이 모두 같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소남 위원** 공휴일 법제화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호주의 경우 법 제정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성태**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관계상 못 드렸는데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경제가 굉장히 폐색적인 그런 상황에서 2001년에 ‘해피 먼데이’라는 공휴일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확대, 지역사회 활동이 활발해졌고 높은 경제효과를 발생시켰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여기에 대해서 경제파급효과를 추정한 자료가 있는데 경제파급효과가 약 11조 8000억 엔으로 나타났고, 고용창출효과는 14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기업 부담은 약 2.8조 엔 정도로 나타났는데 비용편익 측면에서 본다면 편익이 훨씬 더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국가여유국에 휴일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립한 이후에 연휴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발표한 자

료를 보면 중국인의 국내 여행이 크게 증가했고 요식업계, 항공업, 기차 이런 부분에서 큰 매출 증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委員長 趙鎭衡** 좀 짧게 해 주세요.

○**진술인 이성태** 예.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휴일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소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김소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들께서 10분 내지 20분까지 그동안 준비하신 논거를 충분히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거기다가 자료도 우리한테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서 얘기되는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참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긴 논거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냥 단답으로 해 주셔야, 위원님들께 5분 말씀하실 시간밖에 안 드립니다. 5분 동안에 답변해 주시는 진술인이 한 3분 쯤 버리면 위원님이 준비한 것 물어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님은 편의상 죽 5분을 다 질문하고 답변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는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진술인께 그렇게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정수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성 위원** 정수성 위원입니다.

황인철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월 대체공휴일제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내고 ‘민간기업의 공휴일을 강제하는 대체휴일제는 근무체계의 혼란과 인건비 상승 등 기업의 경쟁력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기업들의 추가인건비만 연간 1조 40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대체휴일제로 인한 시간의 양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또는 충분한 휴식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황인철**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했던 자료 중 1조 400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업종에 국한해서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다시 계산한 것은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17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체휴일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하루 더 쉴 수 있는 행복추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정수성 위원 단답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을 줌으로써 생산성이 유발되는 것과 관련하여 계산해 본 것은 없습니까?

○진술인 황인철 그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성 위원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근로자들이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요?

○진술인 황인철 예, 맞습니다.

○정수성 위원 그러니까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근로자들의 휴식권이라든가 삶의 질이 그만큼 상당히 낮아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진술인 황인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하지 않을 뿐이지 근로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주중 하루를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요일 날 쉬는 경우도 있고요.

○정수성 위원 그다음 이성태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체휴일제가 되면 약 2조 8239억 원의 추가 관광 지출이 일어나고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많은 파급효과의 발생이 전망된다고 했는데 경영자총협회에서 주장하는 인건비와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대체공휴일을 지정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진술인 이성태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도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일단 양측의 비용편익 부분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비교하실까 봐 상당히 우려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발표한 경제파급효과는 관광산업의 연관 산업에서 초래되는 편익이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편익은 아닙니다.

○정수성 위원 임지봉 교수님은 법적인 것만 검토하셨기 때문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주장하는 대로 대체공휴일을 하게 되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경영자총협회에서는 인건비가 1조 4000억 늘어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임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십

니까?

○진술인 임지봉 저는 국민들이 추구하는 것이 꼭 경제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 삶의 질 그리고 국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김남조 진술인께 진술하겠습니다.

대체휴일제는 국민들의 소비활동을 유발시켜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고용 창출 및 소비활동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진술인 김남조 사실 경제적인 파급효과하고 사회심리적인 파급효과 양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연구기관에서 건강 부분이라든가 다른 서비스 부분에 대한 파급효과를 이미 산출한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늘어났을 때 고용창출효과가 4만 명 정도 늘어난다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장래에 있을 산업구조의 변화에 우리가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수성 위원 숫자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한 바는 없고요?

○진술인 김남조 예.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산술적으로 나왔지만 사회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라는 식으로만 얘기되고 있습니다.

○정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정수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委員 한나라당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리 네 분 진술인들께서 모두 아주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선 먼저 이성태 연구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국의 공휴일이 과연 선진국에 비해서 적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술인 이성태 외국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적은 편입니다.

○李恩宰 委員 적습니까, 통계적으로?

○진술인 이성태 예.

○李恩宰 委員 확실합니까?

○진술인 이성태 예, 제가……

○**李恩宰 委員** 아니, 그런데 황인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선진국보다 평균적으로 0.6일이 많고, 만약에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고 그러면 1.6일이 많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요?

○**진술인 이성태** 예.

○**李恩宰 委員** 그러면 이것은 허위, 잘못된 보고를 여기서 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진술인 이성태** 글썽요, 제가……

○**李恩宰 委員** 그렇지요?

그다음에 황 본부장님은 저 말씀에 반론이 있습니까?

○**진술인 황인철** 제 자료가, 정확하게 통계를 뽑았기 때문에 지금 다 따로 반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恩宰 委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휴일 법률화와 대체공휴일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대체공휴일이 도입되어서 연간 휴일이 4일 증가할 경우에 경제파급효과가 약 11조 6000억 그다음에 고용창출효과가 약 13만 9500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직접 피해는 최소 5조 7400억, 최대 17조 4550억에 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성태 연구원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대체공휴일 도입에 따라서 공휴일이 4일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유발효과가 8조 443억 원 그다음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3조 5400억 원이 발생해서 총 11조 6000억 원의 경제파급효과가 나타난다고 기술을 했는데, 실제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진술인 이성태** 생산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4일간 전체를 관광에 투입을 해서 관광활동을 할 때 여기에 연관되는 산업에서 생산하는……

○**李恩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가가치유발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산유발효과에 포함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더블 카운팅(double counting)해서 경제파급효과를 부풀린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 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인철 본부장님에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휴 증가라고 하는 것이 고소득층의 해외 관광을 촉진하고 관광수지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진술인 황인철** 그 부분 관련해서 이미 명절 때라든가 연말 같은 때에 외국에 나가는 항공권이 다 동이 납니다. 지금도 아마 연휴가 3일 겹치는 날이 되면 항상 항공권이 동이 나는데 이분들이 국내에서 쓰기보다는, 고소득층들이 외국에 나가서 소비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 역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恩宰 委員** 그다음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황인철 본부장님, 대체공휴일이 서민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왜냐하면 주로 이런 경제 쪽에 마인드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만약에 이처럼 대체공휴일이 도입이 되면 일당근로자 또는 파트타임근로자, 어떤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요?

○**진술인 황인철** 아마 그분들한테 쉬는 날 휴일 근로수당을 주면서 일을 시키실 분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득감소는 분명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계층들이 자영업자라든가 또 일용직 임시근로자를 포함했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서 한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이익은 40%, 손해가 60%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李恩宰 委員** 그다음 또 하나는 도심지역 자영업자도 휴일 증가에 따라서 소득 감소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술인 황인철** 그것은 주말에 여의도에 나오시면 아마 밥 사 드실 데가 없을 겁니다. 그분들이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타격을 입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李恩宰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여가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남조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여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지요?

○**진술인 김남조** 예.

○**李恩宰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주 40시간제 도입 이전인 2000년~2003년 기간 중 상용근로자 근로시간은 연평균 28시간씩 감소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근로시간은 연평균 31.2시간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40시간 도입이 실 근로시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표현을 하신 것이지요?

○**진술인 김남조** 지금 여기 나온 통계는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이거든요, 이 결과가. 그래서 짧은 시간의 결과를 가지고 이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짧은 시간의 결과를, 우리가 트렌드를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간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李恩宰 委員** 그런데 지금 경제계에서 나오신 분 말씀은 사실 그것보다는 이렇게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오히려 이것이 해외로, 국내 관광을 하면 괜찮은데 해외로 관광을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를 많이 유출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견해가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이은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정 위원** 민주당 김유정 위원입니다.

유익한 발제해 주신 네 분 진술인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 논의의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는 문제, 타당한지, 또 하나는 대체공휴일 도입이 실효성이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노동계하고 경영계가 매우 입장이 상이하고요, 또 부처별로도 사실은 명확하게 입장 정리가 안되고 있고 또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공청회는 네 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합리적인 법

제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황인철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계에서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이게 핵심적인 이유가 되지요?

○**진술인 황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정 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공휴일이 2.2일이 증가할 때 기업의 생산차질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약 11조 9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추계를 하셨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조금 과대 혹은 잘못 추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체휴일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공휴일하고 일요일이 겹쳐서 휴일 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어떤 휴일근무수당이나 퇴직금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의 이익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과한 것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라서 휴일이 증가해서 기업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걸 조금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명목휴가가 공휴일이 14일이었는데 실제로는 겹쳐서 6일밖에 사용을 못했거든요. 거기에 차이가 나는 8일에 대한 이익은 고스란히 기업이 가져갔던 것인데, 대체휴일이 도입돼서 휴일이 증가해서 기업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가는 것은 조금 지나친 주장이나 억지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당연히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것이 기업 근로자를 위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차원에서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술인 황인철** 그런데 그 말씀은 본 법안이 추구하고 있는 휴식권이라는 측면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여건이 좋은 걸로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 매출 감소를 기록한 기업들이 반이 넘습니다. 일부 대기업들 빼고 50% 정도가 매출감소를 기록을 했고 또 25%의 기업들이 빚도 갚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점

을 제가 통계로 제출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유정 위원** 말씀하신 추가비용 발생한다는 이 추계하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딱 들어맞는 답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진술인 황인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휴일이라는 휴가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영역 내에서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일을 이만큼 하면 얼마의 급여를 주겠다, 그리고 휴일은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그런 측면이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현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파레토체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체적을 이동을 하다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이익이 어느 쪽으로 갔다 안 갔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님께서 잘못된 비유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유정 위원** 아니요, 이유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가장 큰 이유를 들면서 이 두 가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 부분의 답변을 제가 감안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지봉 교수님께서 헌법상 평등권 그다음에 행복추구권, 휴식권 보장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해외 주요국들이 민간기업의 휴일은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기업의 휴일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고 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휴일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법률이 민간기업을 구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들이 공휴일을 법제화하지 않고 있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나가 첫째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을 때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률과 충돌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경영계에서 주장하듯이 공휴일 법제화했을 경우에 산업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우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제가 아울러서 마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하나하나 들을까요? 마무리가……

○**委員長 趙鎭衡** 다 하셨으니까 답변 주시지요.

○**김유정 위원** 그러면 교수님 답변 듣고 한 가지만 더 이성태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답변하시지요.

○**진술인 임지봉** 질문을 한 3개 정도하신 것 같은데, 일단 법제화를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은데 법제화가 더 좋은 이유는 뭐냐 말씀하셨는데, 법제화를 안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법제화를 안 하는 이유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좀 자율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도 이게 이렇게 하니까 좀 차별이 생긴다 말이지요. 기업에 따라서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게 하는 기업도 있고 공휴일이라서 쉬게 하는 기업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어느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나에 따라서 쉴 수도 있고 못 쉴 수도 있으니까 어떤 휴식권의 실현과 관련해서 차별이 있으니까 이게 평등권의 문제에도 좀 역행하는 소지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일본도 그랬고 이걸 법제화해 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유정 위원** 이성태 박사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남조 교수님하고 이성태 박사님의 발제문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 도입을 하면 문화관광서비스 발전이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타당성조사하신 것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황인철 본부장님이 발제하시면서 지적하셨듯이 대체공휴일 도입을 하면 요식업계, 도시업무지역 내에서 매출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일당근로자나 파트타임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 증가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일면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체공휴일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 도시업무지역 식당들의 어떤 매출 감소나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신 그런 연구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대체공휴일 도입에 따른 총 편익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총 편익이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일부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가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그 부분에 조사하신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신 게 있다면 조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성태** 모든 정책이 모든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분,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총 편익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 제가 말씀드리는 총 편익은 어떤 경제적인, 우리가 금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측면도 있는 반면에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어떤 스트레스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비시장적인 편익까지 모두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국가적인 어떤 공공적 편익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趙鎭衡** 김유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甲潤 委員** 정갑윤 위원입니다.

우선 임지봉 진술인께, 지금 현재 우리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게 몇 %나 되는지 압니까?

○**진술인 임지봉**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저는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鄭甲潤 委員** 흔히들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를 9988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 그래서 9988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답변에 보면, 진술에도 그렇고 평등권 그러는데 그 중소기업들은 지금 현재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가 없습니다. 그저 대기업 하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오더가 떨어질지.

정말 특히 요즘 같이 지난해 우리가 환율이 변동되고 수입…… 우리 자재가 전부 다 수입이니까 정말 힘듭니다. 정말 그분들도 생각하면서 이 평등권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그리고 그럴 때 마다 우리가 열…… 진짜 기업 하는 사람이 열 받는 것은 아까……

○**진술인 임지봉** 그러니까 그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쉬게 해 주자고 이것을 법에 규정

하자는 것입니다.

○**鄭甲潤 委員** 쉬고 나면 기업도 없어지고 자리도 없어집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다음에 황인철 본부장님, 아까 답변하시던데, 사실 우리가 연말연시 빨간 날이 죽 연결되어 있을 때 언론보도를 보면 제일 열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해외 항공권 매진 이것이 항상 뉴스를 탑니다.

정말 기업들은, 정말 99% 중소기업입니다. 저도 중소기업을 한 30여 년 했습니다. 정말 오늘도 이러한 법안 공청회를 한다니까 전화 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물론 근로자도 좋습니다. 일자리 나라 없는 국민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지만, 정말 그것도 우리가 큰 틀에서 함께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대체휴일제는 사실 요즘 전 세계 경제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시점에 조금 점진적으로 우리가 더 관망하면서 또 추진해 나가고……

저는 조금이라도 그래서 소위 휴일 수를 늘려 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가 5대 국경일로 정해 놓고 실제 놀지 않은 날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황인철 본부장님? 제현절하고 한글날. 더군다나 한글날을 저는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 굉장합니다.

○**진술인 황인철** 예.

○**鄭甲潤 委員** 이제 앞으로 한글을 통해서 많이 나라가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이러한, 차라리 대체휴일제보다는 우선 한글날이나 제현절이나 더 나아가서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 놓으면, 물론 그중에 토요일 일요일하고 중복되는 날이 있겠지요.

○**진술인 황인철** 예.

○**鄭甲潤 委員** 있겠고, 그것은 역시 기업 현장에서 지금 기존에도 대체휴일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노사 간에 서로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늘 수 있는 날을 좀 늘려주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황인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황인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글날하고 제헌절이 2006년인지 2008년인지 제가 자료를……

예, 한글날이 1990년에 공휴일에서 삭제가 되었고요, 제헌절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휴일을 늘리는 것보다 2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아직 주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당장 4시간 줄이는 것도 큰 부담일 것이요. 여기에다가 이런 휴일을 증가시킨다고 하면 그 사업장에서는 무척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鄭甲潤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강기정 위원입니다.

결국 저는 대체공휴일제법을 낸 의원 입장에서 이것은 도입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은데요.

우선 황인철 진술인께 여쭙어 보겠는데요. 제가 진술하는 과정에는 보지 못했는데 여기 진술서 73쪽에 보니까 이 법이 법제화 하면 추가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 이것 계산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 황인철 예.

○강기정 위원 도합 전체 경제 손실 12조 963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생산차질액 이것이 어떻게 계산되는 것입니까? 저의 보도자료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진술인 황인철 예, 봤습니다.

○강기정 위원 어떻습니까, 그것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황인철 생산차질액과 관련해서는 76쪽에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강기정 위원 생산차질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생산 차질…… 공휴일 증가에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증가와 퇴직금 추가 부담이 3조 4000, 1조 8000억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 황인철 예, 그렇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생산 차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황인철 그 앞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요일이 공휴일이 됨으로 해서 이때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 부분을 계산한 것이고요. 그 분들

은 일을 하는 것이지요.

○강기정 위원 그렇지요.

○진술인 황인철 일을 어차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서 얘기하는 생산차질액은 대체공휴일이 도입되면서 2.2일의 휴일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평균을 내면 평균 2.2일 쉬는 날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2.2일 사람, 늘어나는 데에 대한……

생산을 참여했을 때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황인철 2.2일에 관한 것이 아니지요.

○강기정 위원 예?

○진술인 황인철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을 보면 일요일은 공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기정 위원 그렇지요, 예.

○진술인 황인철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휴일 날 일을 시키면 50%의 수당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렇습니다, 예.

○진술인 황인철 그런데 그 일요일 날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비율 그다음에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 교대제 사업장 비율 이런 것을 총 감안했을 때 일요일 날 휴일근로수당을 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체휴일 2.2일 늘어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강기정 위원 아무튼 저는 그것이 지금 딱 떨어지지 않는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뭐……

저는 아무튼 중복 계산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은 조금 수치 문제니까 하여튼 중복 계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 어떤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휴일 추가수당을 50%를 주는 것이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다른 나라도 사례가 있습니까?

○진술인 황인철 물론 휴일이나 근로시간 이외에 하루에 8시간을 넘는 경우에 추가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LO 기준이 2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50%를 주게 되어 있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이 수당률이 조금 높다는 말씀입니다.

○강기정 위원 지금 50% 보장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들이 있지요. 오스트리아도 있고 벨기에,

핀란드 등도 있고, 그렇지요?

○진술인 황인철 예.

○강기정 위원 우리나라가 장기,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꼭 그것을……

그런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50%를 주는 것이 타당하나 이 문제를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신지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이 법하고 조금 다른……

○진술인 황인철 예, 다른 문제입니다.

○강기정 위원 노동법 관련 문제니까 그때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주요 선진국도 50% 지급한 나라가 있다 이것은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황인철 예,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하나 더, 자료 83쪽에 보니까 일본이 공휴일 확대 시점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술인 황인철 예.

○강기정 위원 이것은 좀 억지 아닙니까?

○진술인 황인철 그런데 아까……

○강기정 위원 질문이 있었습니까?

○진술인 황인철 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사실은 경제성장률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1년은 분명히 경기적으로 하락하는 요인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강기정 위원 일본이 해피 먼데이를 도입하는 것이 2001년이지요?

○진술인 황인철 예.

○강기정 위원 그런데 2001년……

○진술인 황인철 그다음에 대체휴일을 도입한 것이 2005년이었지요.

○강기정 위원 예? 2001년……

○진술인 황인철 예.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2001년하고 2005년하고 두 번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이?

○진술인 황인철 예.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 도입하자마자…… 이 그래프를 보면, 황 선생께서 내신 그래프를 보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0.2 성장에서 0.3으로. 또 1.9 성장에서 2.0으로.

○진술인 황인철 아니지요. 2001년도에 처음 시

행을 했기 때문에……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했으니까 그다음 해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황인철 아니지요. 그 해에 쉬었기 때문에 그 해에 바로 평가를 해야지요.

○강기정 위원 설령…… 좋습니다. 그 해에 했다 하더라도 이 휴일제 때문에 일본 성장률이 둔화되었거나 하락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해석을 하면, 다음해 것까지 해석하면 상승한 것이지요.

○진술인 황인철 이것은 장기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아까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때 굉장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해의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이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래서 저는 앞서 사회적 비용, 경제 추가비용 문제나 방금 경제성장률 추이 문제나 이렇게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2일이나, 2.9일이나도 또 조금 수치가 다르기는 한데……

○진술인 황인철 예.

○강기정 위원 지금 제 법에 따른 대체휴일 날짜가 조금 다르기도 한데 조금 이렇게 과추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진술인 황인철 일정 부분……

○강기정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그것은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성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런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도 있는데 또 나오는 비용도 솔찬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여기 과대 추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12조 정도라면 실제로 대체휴일제에 따른 다른 경제 소비 유발을 통한 효과 이런 것을 추계를 하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진술인 이성태 일단 작년의 연구에서는 관광산업 부분에 대해서 편익 효과를 계산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이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나타나는 경제 파급효과를 지금 연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대체휴일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데 너무 경제계에서…… 물론 대기업에는 일정한, 뭐라고 그럴까, 이 휴일제를 도입했을 때 오는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조금 양보하면서, 경제계가 조금 양보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동시간의 과다 문제나 소위 헌법에서 원론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추구권에 좀 맞추어 주는 것이 어찌나 이런 생각이 저는 있어서 하여튼 그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 선생도 한 말씀 더 하시려면……

○**진술인 황인철** 예. 아까 제가 발표를 할 때 안 계셔서 그런데요. 사실 대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노조가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별 부작용이 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 비용 증가분이 조금 있을 것이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잘못하면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손해를 볼 것이라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강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인철 본부장님 말씀하실 적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66%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진술인 황인철**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그렇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근로자가?

○**진술인 황인철** 예, 근로자 수.

○**委員長 趙鎭衡** 그리고 5인 미만이 또 얼마라고 하셨지요?

○**진술인 황인철** 29.9%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29.9%.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적은 소기업 이런 데가 영향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진술인 황인철** 예, 맞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예, 알았습니다.

다음 이범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 위원** 이성태 연구원께 잠깐 묻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근로기준법상에도 일주일에 하루 휴식을 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아마 서양의 기독교 관점에서 일주일을 정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대체휴일제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이들을 쉬게 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효과하고 3일에 한번 정도 쉬었을 경우에 효과, 즉 노동생산성의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진술인 이성태** 현재까지는 그렇게 세밀하게까지는 분석된 결과들이 아직 없는 것으로……

○**이범래 위원** 없습니까?

○**진술인 이성태** 예.

○**이범래 위원** 왜냐하면 연이어서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휴식권이 보장이 되고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대체휴일제보다는 여름휴가를 길게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혹시 그런 연구는 또 하신 것이 있습니까?

○**진술인 이성태** 여름휴가를 길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대체공휴일제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재계가 과연 여름에 긴 휴가를 찬성을 할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는 여름휴가에 휴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계 기간에. 이럴 때는 관광지 혼잡이 생기고요 도로에서 나타나는 정체에 따른 비용 그리고 바가지요금 극성 이런 것들이 관광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국민의 관광 질이나 휴가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분산을 시키자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장기휴가, 집중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편익보다는 비용적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범래 위원** 지금 연구결과를 보면 여기는 주로 대체휴일제를 도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중에 국내관광을 많이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연구결과를 써놨는데요. 아마 이성태 연구원님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직장 근로자들이 휴일 날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거의 80%가 집에서 텔레비전 본다, 그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즉 대체휴일제를 더 도입을 했다고 해서 국내관광산업이 증가된다는 그런 확실한 근거도 없고요 또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율이 높아졌을 때 연이어서 쉬었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겠냐 하는 데 좀 의문을 갖고 있거

든요.

아까 여름에 휴가가 집중이 돼서 여러 가지 교통 혼잡이나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휴가 형태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 생산성 향상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연구를 좀더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 보는 것입니다.

○진술인 이성태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 활동 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기업 근로자보다는 공무원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TV를 본다거나 이런 활동이 좀 많은데 이제 근로자들의 나이가 젊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을 보면 여가활동을 외부로 나가서 하는 경향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제가 도입이 돼서 연휴기간이 꽤 확보가 된다면 분명히 숙박·관광 이런 것들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이미 주 40시간 근무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나서도 숙박·관광이나 당일관광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 관광형태도 상당히 다양화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범래 위원 혹시 그 연구조사 결과 중에 프랑스라든지 선진국에서 일찌감치 40시간 도입을 하면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그런 연구가 없었습니까?

○진술인 이성태 예,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범래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이범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충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희철 위원 먼저 하시지요.

○김희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위원입니다.

오늘 대체휴일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 이렇게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남조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김남조 진술인께서는 대체휴일을 가져옴으로써 사무 질 향상을 가져오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김남조 진술인 및 이성태 진술인님 그다음에 임지봉 진술인님들이 주장을 하셨고 황인철 진술인만 여기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여하튼간에

사무 질 향상과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맞지요?

○진술인 김남조 예.

○김희철 위원 현행 공휴일 관련 법제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치주의 위반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위반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제정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어서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술인 김남조 법률로 안정적으로 휴가권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철 위원 지금까지 여러 진술인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진술인 김남조 그것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같은 목적을 지닌다면 무난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희철 위원 현행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께서도 제정안 취지에 동의하시지요?

○진술인 김남조 예.

○김희철 위원 법치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가 되는 사항은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황인철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황인철 진술인님께서서는 대체공휴일의 도입이 바로 서민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나 일용직들의 소득이 감소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진술인 황인철 예.

○김희철 위원 휴일 수 과다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황인철 제가 말씀……

○김희철 위원 휴일 수가 과다함에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진술인 황인철**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첫 번째는 저희 기업에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고용이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휴일 수가 과다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경총도 오히려 지금 있는 휴일을 제대로 써서 아까 말씀드린 휴가에 대한 보상체도를 없애자고 한 얘기도 그 보상체도가 없으면, 요즘 근로자들은 권리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김희철 위원** 그러면 노동생산성이 저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지 못하고 또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에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진술인께서는 다른 견해를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재계나 산업계의 주장은 아까 황인철 진술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휴일을 늘리면 기업 부담이 급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담이 급증한다는 것을 요약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진술인 황인철**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호를 말씀하셨는데……

○**김희철 위원** 좀더 쓰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예.

○**진술인 황인철** 지금 근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잔업을 요구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로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근로자들의 행복이 하루 더 쉬는 데 있는지 아니면 더 높은 소득을 원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한번 짚어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연봉 6000만 원 넘는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에서도 일을 더 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김희철 위원** 요약해서 좀 말씀을, 아까 하신 말씀이니까요.

○**진술인 황인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선진국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총에서 요구하는 것은 생산성을 좀더 높이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희철 위원** 우리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최장 1위입니다. 그런 장시간의 노동시간이 도리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OECD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황인철**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경제계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노동계하고 방법을 달리하고 있고, 저희는 휴가나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을 좀 줄이면 근로자들이 일을 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소득이 줄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재계의 주장은 진술인과 똑같은 주장입니다마는, 찬성자들은 대체휴일을 도입하게 되면 휴일 증가로 인한 민간 소비지출이 늘어나므로 경제적 파급효과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피력해 주십시오.

○**진술인 황인철** 그 부분은, 휴일 수가 늘어나면 내수가 촉진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고용에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을 노동시장에 자꾸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소득이 없다가 있는 사람이 내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지 다만 하루 이틀 선다고 그래서 내수가 활성화된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도 있습니다마는 관광, 여행 및 여가활동을 하게 되면 민간 소비지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소비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일자리가 되고 또 거기서 소득이 일어나고,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수가 진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기업이 이득이 생겨야 경제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모든 여건으로 볼 때 여하튼간에 대체휴일을 도입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비가 진작이 되고, 이렇

게 해서 경제의 선순환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경제가 발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委員長 趙鎭衡** 정리하세요.

○**진술인 황인철** 닳이 먼저냐 달같이 먼저냐 애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이 먼저 늘고 그래서 소득 증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고 고용이 굉장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관광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1년에 열흘 정도를 여행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휴가가 도입이 됐을 경우에 열흘에 더하기 1.5일이 늘어나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아마 열흘 중에서 시간 배분을 연휴가 있는 그때에 집어넣어서 여행을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 권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 권경석 위원입니다.

법안소위 심의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우선 이성태 연구원님하고 황인철 본부장,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연구원님!

○**진술인 이성태** 예.

○**권경석 위원** 황인철 본부장께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법안소위 때 필요하니까 견해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진술인 이성태** 예.

○**권경석 위원** 첫째, 일본이 대체휴일, 공휴일 지정을 한 2001년도와 2005년에 휴식권 증대라든지 관광산업 진흥 등에 기여는 했지만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대체 법정공휴일 연간 평균 생산 차질액이 6조 7200여억 원에 달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세 번째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측면 때문에 대체공휴일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론이 지금 주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문

하신 바와 같이 휴일근무수당 할증료가 50%로 ILO 권고 수준인 25%보다 높다,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책이 마련돼야 기업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 견해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는 내용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휴일제도를 통해서 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난 것은 일본 정부, 국토교통성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런 효과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간소비 활성화나 여행 증가분 이런 것들도 다 조사된 결과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경총에서 발표한 생산 차질액 부분에 대해서 가령 경총에서 이것을 계산할 때 모형 수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가정상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량을 근로시간의 단일변수로 보는 것은 상당히 오류가 있는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경석 위원** 그 부분도 이성태 연구원이 보는 입장에서 반박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증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높은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유럽 산업 관계 연구소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50%에서 100% 주는 국가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성태** 예.

○**권경석 위원** 황인철 본부장님, 황 본부장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우선 대체공휴일을 시행하는 나라가 일본 러시아 미국 호주도 실제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만 실시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아까 제기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법률로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프

랑스의 경우에도 2주 동안은 바캉스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 공휴일과 연차휴가 다 합하면 한국이 제일 적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장해 온 황 본부장 주장하고는 좀 상이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25일인데, 물론 실제 공휴일하고 연차휴가 다 포함해서 토털 25일이다 이 말입니다. 일본은 35일, 독일은 38일, 러시아 36일, 미국·호주도 32일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휴식권을 보장한 기간이 우리가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근로자의 평균 노동일이 과다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134시간, 일본이 1836시간, 독일은 1352시간, 미국은 1797시간,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지금 자꾸 견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개선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종합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치우 개선의 효과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대기업과 같은 여건이 좋은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다시 말해서 차별화 폭을 줄임으로써 사기진작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생산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견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 다 들어보니까 이성태 연구원께 질문한 이 세 가지, 황인철 본부장께 질의한 이 다섯 가지 정도가 서로 대립되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황 본부장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황인철** 먼저 대체공휴일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시행을 않고 있다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휴일·휴가제도를 검토했을 때 저희가 절대 적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법률로 제정하는 문제는 프랑스의 바캉스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자의 날 쉬도록 돼 있고요, 주휴일 다 규정이 돼 있고 또 연차휴가가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면 월차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화하는 것의 문제는, 제가 오늘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이게 공무원들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공무원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공무원들의 근무와 여러 가지 보상에 관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전부 법률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화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일에 관한 통계를 다 뽑아서 제 자료에 적시한 것이 저희는 정확하다고 보는데 만약 이 자료가 잘못됐다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관련된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절대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득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자료로 좀 내주세요.

○**진술인 황인철** 예,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근로조건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적드리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황인철 본부장님하고 이성태 연구원님, 제가 여덟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주장한 내용이 중복되지만 구체적인 보완 자료가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권경석 위원님께 보내드리세요, 법안심사소위원장이시니까.

다음 김충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충조 위원** 김충조 위원입니다.

먼저 김남조 교수께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공술 내용을 보면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는 것이, 여기서 장황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결국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남조 예.

○김충조 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짚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남조 지금 논의 중에서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범위를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제조업 위주로 갔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 범위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중소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제조업에서의 위축은 또 다른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측면이 필요하고 그럼에 따라서 결국 단기적으로는 제조업과 같은 중소기업에 나름대로 영향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휴일제를 추진하고 있는 또는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이라든가 또 다른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금을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충조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면 결국 실근로시간이 단축된다,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역시 여기에 연계해서 추가 근로시간도 단축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로 인해서 임금 저하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데 이것과 대응해서는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사회적 지원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술인 김남조 사실 우리가 만약에 토·일을 양쪽으로 본격적으로 다 쉬게 된다면 육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아에 대한 지원을 좀더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예도 될 수 있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요.

○김충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성태 연구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성태 연구원께서는 한국이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휴식시간은 또 가장 최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하시면서, 2001

년도 것이기는 합시다마는 결국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노동 공급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 노동자가 자기가 소속돼 있는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진술인 이성태 예.

○김충조 위원 이것은 제가 환기시켜 드린 것이고요, 황인철 본부장께서 제가 하는 질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연차유급휴가 취득률이 30~40%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그리고 업무 과다에 의한 것이 27%이고 직장 내 경직 분위기가 24%이다, 업무 과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직장 내 경직 분위기 24%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진술인 이성태 저희가 작년에 이 휴일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업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인천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근로자들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고 싶어도 자신이 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대신해야 되고 또 휴가를 갈 경우에 직장상사에 대한 눈치가……

○김충조 위원 눈치 보기, 결국 쉽게 말해서 눈치가 보인다 이런 뜻이네요?

○진술인 이성태 예, 면담 자료뿐만 아니라 신문기사에도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충조 위원 됐습니다.

황인철 본부장님, 지금 제가 교수님과 연구원께 질의를 했는데 이 두 분의 공술 내용을 보면 황인철 본부장께서 오늘 계량적으로, 숫자적으로 만일 대체휴일제가 실시되면 기업이 이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되고 부담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요지로 발표를 하셨는데 이 두 분 얘기를 참고로 했을 때 손실과 부담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별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술인 황인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

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조 위원** 마지막으로 임지봉 교수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법리적으로 휴식권의 확보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서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 그 충족을 위해서도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요지의 공술이었지요?

○**진술인 임지봉** 예, 딱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김충조 위원** 그러십시오.

○**진술인 임지봉** 아까 대체휴일제를 하게 되면 휴일이 더 늘어나 가지고 기업에 생산성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손실이라고 표현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놀아야 할 날인데……

○**김충조 위원** 그것은 황인철 본부장이 주장한 것이지요?

○**진술인 임지봉** 예, 위원님 중에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놀아야 할 날인데 일요일하고 겹쳐 가지고 못 논 거예요. 그래서 놀아야 될 날에 안 놀아서 생긴 기업의 이득이야말로 부당한 이득인 것이지 옹당 놀아야 될 날에 그것을 공휴일 다음으로 해서 놀리는 것 가지고……

○**委員長 趙鎭衡** 그 정도 강조하셨으면 됐어요.

○**김충조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끝까지 말씀하세요.

○**진술인 임지봉** 그것을 손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대체공휴일제는 법적 정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도입해서 또 지금처럼 대통령령에 맡겨 놓으면 그게 시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법에 넣자는 것입니다.

○**김충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委員長 趙鎭衡**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진술인을 저희 행정실에서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찬성하고 반대하고 반반, 둘둘 됐어야 되는데 3 대 1로 돼 가지고, 특히 중소기업을 대변해서 나오신 황인철 본부장님께서 어떻게든지 중소기업의 여러 어려움을 대변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래

서 시간도 주는 것 이상으로 계속해서 더 활용해서 가면서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 자기 소신을 성의껏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하느라고 애 많이 써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3건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오전, 오후 장시간 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강기정	권경석	김소남	김유정
김충조	김태원	김희철	안경률
원유철	유정현	이범래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정갑윤	정수성
조진형	홍재형		

○**청가 위원(1인)**

신지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전문위원	손충덕

○**출석 진술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서경진(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변호사)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임준태(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김남조(한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황인철(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이성태(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고사항】

○의안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10. 3. 22 이상민 · 안민석 · 권선택 · 박선영 ·
임영호 · 류근찬 · 이명수 · 김창수 · 변웅전 ·
이용희 의원 발의)

3월 2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
정법률안**

(2010. 3. 23 정부 제출)

3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